

# 이촌 르엘 입주자모집공고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2-790-0190

주택유형	해당 지역	기타 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4.03.30. 이전부터 계속 거주)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10년	3년	2년	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등기 우편 접수)	계약체결
			해당지역	기타지역				
일정	2026.03.30.(월)	2026.04.09.(목)	2026.04.10.(금)	2026.04.13.(월)	2026.04.14.(화)	2026.04.20.(월)	2026.04.20.(월)~ 2026.04.24.(금)	2026.05.02.(토)~ 2026.05.04.(월)

## 1 공통 유의사항

- 사이버 분양사무실 운영 안내사항
  - ※ "이촌 르엘"은 사이버 견본주택(<https://www.lottecastle.co.kr>)으로만 운영되며, 분양일정 및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세부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이촌 르엘"은 별도의 견본주택이 운영되지 않으며, 분양사무실 전화 상담만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은 평일 오전 10:00부터 오후 5:30까지이며 공휴일은 통화연결이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발표 이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서류제출은 등기 우편으로 접수 예정이며, 공급계약 체결은 사업주체에서 별도 지정한 계약장소에서 방문계약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입주자모집공고상 계약체결 장소 및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향후 진행 일정 및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임)
- "이촌 르엘" 사이버 분양사무실 오픈에 따른 고객 상담을 상담전화(☎02-790-0190)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의 청약자격 사전관리 및 청약 가상체험을 통하여 착오신청 등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

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필요	필요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이촌 르엘”은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으로만 구성되어 85㎡ 이하 면적에만 공급되는 기관추천,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배정 세대는 없습니다.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lottecastle.co.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상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제한기간이 2년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 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중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 단, **일부 은행에 한하여 중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사항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청약자격 및 순위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행위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행위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본 주택은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물량이 없습니다.)

##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3.30.(월)**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가(2024.03.30.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다자녀, 노부모)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등기 우편 접수)	계약체결
		해당지역 (서울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기타지역 (서울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경기도, 인천시 거주자)				
일 정	2026.04.09.(목)	2026.04.10.(금)	2026.04.13.(월)	2026.04.14.(화)	2026.04.20.(월)	2026.04.20.(월)~ 2026.04.24.(금)	2026.05.02.(토)~ 2026.05.04.(월)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li> <li>■ (현장접수) 이촌 르엘 분양사무실(르엘캐슬갤러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li> <li>■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li> </ul>	<b>등기우편 접수</b>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북로 2256, 르엘캐슬갤러리, East동 4층 (자양동)	<b>방문계약</b>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분양사무실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세대원간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투기과열지구인 서울특별시 용산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과 거주무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기준일	기간	관계법령
전매제한기간	최초 당첨자 발표일(2026.04.20.)로 부터	3년(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거주무기기간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 입주해야 하며 실입주일로부터	2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 본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전매제한은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 2026.04.20.)부터 3년(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까지이나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의거 2년의 거주무기기간이 해당되어 전매 또는 매매 시 규제 대상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용산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 (「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 원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매수자(전매포함)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공급자, 수분양자 각 1/2 납부)
  - 아파트 공급계약서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발코니 확장공사 및 기타선택품목 포함)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분양계약자는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추가선택품목 계약서에 대하여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각 1/2씩 분담하여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자가 분담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본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 거래가격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 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 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납부방법 : 정부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 은행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 담당)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2025.10.31.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과 - 11466(2026.03.27.)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1-160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7층 9개동 총 750세대(조합원분 653세대, 보류지 9세대 포함) 중 일반분양 88세대  
[특별공급 10세대(다자녀가구 8세대, 노부모부양 2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7년 0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m<sup>2</sup>,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타입)	주택공급면적(m <sup>2</sup>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율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계		
2026-000048	01	100.9300	100	100.9300	20.9520	121.8820	69.1194	191.0014	39.0714	22	2	1	3	19	-
	02	106.1000	106	106.1000	22.0252	128.1252	72.6599	200.7851	41.0728	24	3	1	4	20	1
	03	117.0700	117	117.0700	24.3025	141.3725	80.1725	221.5450	45.3194	13	1	-	1	12	1
	04	118.0300	118	118.0300	24.5018	142.5318	80.8299	223.3617	45.6911	12	1	-	1	11	1
	05	122.8800	122	122.8800	25.5086	148.3886	84.1513	232.5399	47.5686	17	1	-	1	16	-
합 계										88	8	2	10	78	3

※ 당 아파트는 전용면적 85m<sup>2</sup> 초과 주택으로만 구성되어 85m<sup>2</sup> 이하 면적에만 공급되는 기관추천,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배정 세대는 없습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청약시)	100.9300	106.1000	117.0700	118.0300	122.8800
약식표기 (타입)	100	106	117	118	122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sup>2</sup>)x0.3025 또는 공급면적(m<sup>2</sup>)÷3.3058

※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외벽면적 제외)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登記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관리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 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인허가 변경 또는 필지 합병 및 분할, 확정측량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세대별 대지지분은 전체 대지면적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배분 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登記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 및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6호에 의거 건축시설의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그 대지 소유권이 주어지되,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음)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기되고, 이에 따라 세대별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이 소수점 이하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경미한 설계변경, 확정측량 등으로 인하여 다소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에 대해서는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표

[단위: 세대, 원]

약식표기 (타입)	공급 세대수	동호수	공급금액				계약금(20%) 계약시	중도금(60%)			잔금(20%) 입주지정일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회(20%) 2026-07-10	2회(20%) 2026-09-10	3회(20%) 2026-12-10	
100	22	32동 206호	1,888,272,000	639,752,727	63,975,273	2,592,000,000	518,400,000	518,400,000	518,400,000	518,400,000	518,400,000
		32동 306호	1,892,643,000	641,233,636	64,123,364	2,598,000,000	519,600,000	519,600,000	519,600,000	519,600,000	519,600,000
		32동 406호	1,897,014,000	642,714,545	64,271,455	2,604,000,000	520,800,000	520,800,000	520,800,000	520,800,000	520,800,000
		32동 506호	1,901,385,000	644,195,455	64,419,545	2,610,000,000	522,000,000	522,000,000	522,000,000	522,000,000	522,000,000
		32동 606호	1,905,756,000	645,676,364	64,567,636	2,616,000,000	523,200,000	523,200,000	523,200,000	523,200,000	523,200,000
		32동 706호	1,910,127,000	647,157,273	64,715,727	2,622,000,000	524,400,000	524,400,000	524,400,000	524,400,000	524,400,000
		32동 806호	1,913,769,500	648,391,364	64,839,136	2,627,000,000	525,400,000	525,400,000	525,400,000	525,400,000	525,400,000
		32동 906호	1,918,140,500	649,872,273	64,987,227	2,633,000,000	526,600,000	526,600,000	526,600,000	526,600,000	526,600,000
		32동 1006호	1,922,511,500	651,353,182	65,135,318	2,639,000,000	527,800,000	527,800,000	527,800,000	527,800,000	527,800,000
		32동 1106호	1,926,882,500	652,834,091	65,283,409	2,645,000,000	529,000,000	529,000,000	529,000,000	529,000,000	529,000,000
		32동 1206호	1,931,253,500	654,315,000	65,431,500	2,651,000,000	530,200,000	530,200,000	530,200,000	530,200,000	530,200,000
		32동 1306호	1,935,624,500	655,795,909	65,579,591	2,657,000,000	531,400,000	531,400,000	531,400,000	531,400,000	531,400,000
		32동 1406호	1,939,995,500	657,276,818	65,727,682	2,663,000,000	532,600,000	532,600,000	532,600,000	532,600,000	532,600,000
		32동 1506호	1,944,366,500	658,757,727	65,875,773	2,669,000,000	533,800,000	533,800,000	533,800,000	533,800,000	533,800,000
		32동 1606호	1,948,737,500	660,238,636	66,023,864	2,675,000,000	535,000,000	535,000,000	535,000,000	535,000,000	535,000,000
		32동 1706호	1,953,108,500	661,719,545	66,171,955	2,681,000,000	536,200,000	536,200,000	536,200,000	536,200,000	536,200,000
		32동 1806호	1,957,479,500	663,200,455	66,320,045	2,687,000,000	537,400,000	537,400,000	537,400,000	537,400,000	537,400,000
		32동 1906호	1,961,850,500	664,681,364	66,468,136	2,693,000,000	538,600,000	538,600,000	538,600,000	538,600,000	538,600,000
		32동 2006호	1,966,221,500	666,162,273	66,616,227	2,699,000,000	539,800,000	539,800,000	539,800,000	539,800,000	539,800,000
		32동 2106호	1,970,592,500	667,643,182	66,764,318	2,705,000,000	541,000,000	541,000,000	541,000,000	541,000,000	541,000,000
32동 2206호	1,974,963,500	669,124,091	66,912,409	2,711,000,000	542,200,000	542,200,000	542,200,000	542,200,000	542,200,000		
32동 2506호	1,988,076,500	673,566,818	67,356,822	2,729,000,000	545,800,000	545,800,000	545,800,000	545,800,000	545,800,000		
106	24	32동 205호	1,977,149,000	669,864,545	66,986,455	2,714,000,000	542,800,000	542,800,000	542,800,000	542,800,000	542,800,000
		32동 305호	1,981,520,000	671,345,455	67,134,545	2,720,000,000	544,000,000	544,000,000	544,000,000	544,000,000	544,000,000
		32동 405호	1,986,619,500	673,073,182	67,307,318	2,727,000,000	545,400,000	545,400,000	545,400,000	545,400,000	545,400,000
		32동 505호	1,990,990,500	674,554,091	67,455,409	2,733,000,000	546,600,000	546,600,000	546,600,000	546,600,000	546,600,000
		32동 605호	1,995,361,500	676,035,000	67,603,500	2,739,000,000	547,800,000	547,800,000	547,800,000	547,800,000	547,800,000
		32동 705호	2,000,461,000	677,762,727	67,776,273	2,746,000,000	549,200,000	549,200,000	549,200,000	549,200,000	549,200,000
		32동 805호	2,004,832,000	679,243,636	67,924,364	2,752,000,000	550,400,000	550,400,000	550,400,000	550,400,000	550,400,000
		32동 905호	2,009,203,000	680,724,545	68,072,455	2,758,000,000	551,600,000	551,600,000	551,600,000	551,600,000	551,600,000
		32동 1005호	2,013,574,000	682,205,455	68,220,545	2,764,000,000	552,800,000	552,800,000	552,800,000	552,800,000	552,800,000
		32동 1105호	2,018,673,500	683,933,182	68,393,318	2,771,000,000	554,200,000	554,200,000	554,200,000	554,200,000	554,200,000
		32동 1205호	2,023,044,500	685,414,091	68,541,409	2,777,000,000	555,400,000	555,400,000	555,400,000	555,400,000	555,400,000
		32동 1305호	2,027,415,500	686,895,000	68,689,500	2,783,000,000	556,600,000	556,600,000	556,600,000	556,600,000	556,600,000

		32동 1405호	2,031,786,500	688,375,909	68,837,591	2,789,000,000	557,800,000	557,800,000	557,800,000	557,800,000	557,800,000
		32동 1505호	2,036,886,000	690,103,636	69,010,364	2,796,000,000	559,200,000	559,200,000	559,200,000	559,200,000	559,200,000
		32동 1605호	2,041,257,000	691,584,545	69,158,455	2,802,000,000	560,400,000	560,400,000	560,400,000	560,400,000	560,400,000
		32동 1705호	2,045,628,000	693,065,455	69,306,545	2,808,000,000	561,600,000	561,600,000	561,600,000	561,600,000	561,600,000
		32동 1805호	2,049,999,000	694,546,364	69,454,636	2,814,000,000	562,800,000	562,800,000	562,800,000	562,800,000	562,800,000
		32동 1905호	2,055,098,500	696,274,091	69,627,409	2,821,000,000	564,200,000	564,200,000	564,200,000	564,200,000	564,200,000
		32동 2005호	2,059,469,500	697,755,000	69,775,500	2,827,000,000	565,400,000	565,400,000	565,400,000	565,400,000	565,400,000
		32동 2105호	2,063,840,500	699,235,909	69,923,591	2,833,000,000	566,600,000	566,600,000	566,600,000	566,600,000	566,600,000
		32동 2205호	2,068,211,500	700,716,818	70,071,682	2,839,000,000	567,800,000	567,800,000	567,800,000	567,800,000	567,800,000
		32동 2305호	2,073,311,000	702,444,545	70,244,455	2,846,000,000	569,200,000	569,200,000	569,200,000	569,200,000	569,200,000
		32동 2405호	2,077,682,000	703,925,455	70,392,545	2,852,000,000	570,400,000	570,400,000	570,400,000	570,400,000	570,400,000
		32동 2505호	2,082,053,000	705,406,364	70,540,636	2,858,000,000	571,600,000	571,600,000	571,600,000	571,600,000	571,600,000
117	13	34동 202호	2,189,871,000	741,935,455	74,193,545	3,006,000,000	601,200,000	601,200,000	601,200,000	601,200,000	601,200,000
		34동 302호	2,197,884,500	744,650,455	74,465,045	3,017,000,000	603,400,000	603,400,000	603,400,000	603,400,000	603,400,000
		34동 402호	2,205,898,000	747,365,455	74,736,545	3,028,000,000	605,600,000	605,600,000	605,600,000	605,600,000	605,600,000
		34동 502호	2,213,911,500	750,080,455	75,008,045	3,039,000,000	607,800,000	607,800,000	607,800,000	607,800,000	607,800,000
		34동 602호	2,221,925,000	752,795,455	75,279,545	3,050,000,000	610,000,000	610,000,000	610,000,000	610,000,000	610,000,000
		34동 702호	2,229,938,500	755,510,455	75,551,045	3,061,000,000	612,200,000	612,200,000	612,200,000	612,200,000	612,200,000
		34동 802호	2,237,952,000	758,225,455	75,822,545	3,072,000,000	614,400,000	614,400,000	614,400,000	614,400,000	614,400,000
		34동 902호	2,245,965,500	760,940,455	76,094,045	3,083,000,000	616,600,000	616,600,000	616,600,000	616,600,000	616,600,000
		34동 1002호	2,253,979,000	763,655,455	76,365,545	3,094,000,000	618,800,000	618,800,000	618,800,000	618,800,000	618,800,000
		34동 1102호	2,262,721,000	766,617,273	76,661,727	3,106,000,000	621,200,000	621,200,000	621,200,000	621,200,000	621,200,000
		34동 1202호	2,270,734,500	769,332,273	76,933,227	3,117,000,000	623,400,000	623,400,000	623,400,000	623,400,000	623,400,000
		34동 1302호	2,278,748,000	772,047,273	77,204,727	3,128,000,000	625,600,000	625,600,000	625,600,000	625,600,000	625,600,000
		34동 1402호	2,286,761,500	774,762,273	77,476,227	3,139,000,000	627,800,000	627,800,000	627,800,000	627,800,000	627,800,000
118	12	31동 208호	2,258,350,000	765,136,364	76,513,636	3,100,000,000	620,000,000	620,000,000	620,000,000	620,000,000	620,000,000
		31동 308호	2,267,092,000	768,098,182	76,809,818	3,112,000,000	622,400,000	622,400,000	622,400,000	622,400,000	622,400,000
		31동 408호	2,276,562,500	771,306,818	77,130,682	3,125,000,000	625,000,000	625,000,000	625,000,000	625,000,000	625,000,000
		31동 508호	2,286,033,000	774,515,455	77,451,545	3,138,000,000	627,600,000	627,600,000	627,600,000	627,600,000	627,600,000
		31동 608호	2,295,503,500	777,724,091	77,772,409	3,151,000,000	630,200,000	630,200,000	630,200,000	630,200,000	630,200,000
		31동 708호	2,304,974,000	780,932,727	78,093,273	3,164,000,000	632,800,000	632,800,000	632,800,000	632,800,000	632,800,000
		31동 808호	2,314,444,500	784,141,364	78,414,136	3,177,000,000	635,400,000	635,400,000	635,400,000	635,400,000	635,400,000
		31동 908호	2,323,915,000	787,350,000	78,735,000	3,190,000,000	638,000,000	638,000,000	638,000,000	638,000,000	638,000,000
		31동 1008호	2,333,385,500	790,558,636	79,055,864	3,203,000,000	640,600,000	640,600,000	640,600,000	640,600,000	640,600,000
		31동 1108호	2,342,856,000	793,767,273	79,376,727	3,216,000,000	643,200,000	643,200,000	643,200,000	643,200,000	643,200,000
		31동 1208호	2,352,326,500	796,975,909	79,697,591	3,229,000,000	645,800,000	645,800,000	645,800,000	645,800,000	645,800,000
		31동 1308호	2,363,982,500	800,925,000	80,092,500	3,245,000,000	649,000,000	649,000,000	649,000,000	649,000,000	649,000,000
122	17	34동 201호	2,298,417,500	778,711,364	77,871,136	3,155,000,000	631,000,000	631,000,000	631,000,000	631,000,000	631,000,000
		34동 301호	2,305,702,500	781,179,545	78,117,955	3,165,000,000	633,000,000	633,000,000	633,000,000	633,000,000	633,000,000
		34동 401호	2,312,259,000	783,400,909	78,340,091	3,174,000,000	634,800,000	634,800,000	634,800,000	634,800,000	634,800,000
		34동 501호	2,318,815,500	785,622,273	78,562,227	3,183,000,000	636,600,000	636,600,000	636,600,000	636,600,000	636,600,000
		34동 601호	2,325,372,000	787,843,636	78,784,364	3,192,000,000	638,400,000	638,400,000	638,400,000	638,400,000	638,400,000
		34동 701호	2,332,657,000	790,311,818	79,031,182	3,202,000,000	640,400,000	640,400,000	640,400,000	640,400,000	640,400,000
		34동 801호	2,339,213,500	792,533,182	79,253,318	3,211,000,000	642,200,000	642,200,000	642,200,000	642,200,000	642,200,000
		34동 901호	2,345,770,000	794,754,545	79,475,455	3,220,000,000	644,000,000	644,000,000	644,000,000	644,000,000	644,000,000
		34동 1001호	2,353,055,000	797,222,727	79,722,727	3,230,000,000	646,000,000	646,000,000	646,000,000	646,000,000	646,000,000
		34동 1101호	2,359,611,500	799,444,091	79,944,409	3,239,000,000	647,800,000	647,800,000	647,800,000	647,800,000	647,800,000
		34동 1201호	2,366,168,000	801,665,455	80,166,545	3,248,000,000	649,600,000	649,600,000	649,600,000	649,600,000	649,600,000
		34동 1301호	2,372,724,500	803,886,818	80,388,818	3,257,000,000	651,400,000	651,400,000	651,400,000	651,400,000	651,400,000

	34동 1401호	2,380,009,500	806,355,000	80,635,500	3,267,000,000	653,400,000	653,400,000	653,400,000	653,400,000	653,400,000
	34동 1501호	2,386,566,000	808,576,364	80,857,636	3,276,000,000	655,200,000	655,200,000	655,200,000	655,200,000	655,200,000
	34동 1601호	2,393,122,500	810,797,727	81,079,773	3,285,000,000	657,000,000	657,000,000	657,000,000	657,000,000	657,000,000
	34동 1701호	2,399,679,000	813,019,091	81,301,909	3,294,000,000	658,800,000	658,800,000	658,800,000	658,800,000	658,800,000
	34동 1801호	2,406,964,000	815,487,273	81,548,727	3,304,000,000	660,800,000	660,800,000	660,800,000	660,800,000	660,800,000

#### ■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분양가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플러스옵션 미포함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동·호수가 배정됩니다.
- 당첨자는 동·호수의 위치를 반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청약예금 통장 사용 불가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시공사, 분양 마케팅사 등에 이의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승강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공용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登記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공급금액을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하며 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登記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대출에 따른 주택신용보증수수료 및 인지대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에 관한 추가비용은 대출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주체는 사업주체의 알선 조건에 충족하는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20% 완납 후 중도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나 중도금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 발급제한 등)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라도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공급대금, 별도품목대금(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등),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 중도금 대출 이자, 연체료 등을 입주 전에 완납하고, 중도금 대출금은 상환(담보대출로의 전환 포함)하여야 하며 시행사 시공사가 요구한 제반서류를 제출한 후 입주일이 명시된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잔금 납부일정 및 입주예정 시기는 공사 진척상황(공정률)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고,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자 본인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잔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사용검사일 이후 약정된 잔금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실시하며, 입주일과 관계없이 사업주체의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조건은 판매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당첨서류는 서류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시에는 계약해제가 될 수 있으며,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		100	106	117	118	122	합계
다자녀가구	서울특별시 거주자 (50%)	1	2	1	1	1	6
특별공급	서울특별시 거주자 중 낙첨자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1	1	-	-	-	2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1	-	-	-	2
합 계		3	4	1	1	1	10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당 아파트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으로만 구성되어 85㎡ 이하 면적에만 공급되는 기관추천,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배정 세대는 없습니다.

■ 특별공급 공통 사항 -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특별공급 배정세대가 없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항목 생략)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p>'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p> <p>→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li> <li>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li> <li>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li> </ol> </div> <p>→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주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li> <li>-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li> <li>-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li> <li>-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li> </ul>

※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제3항제2호에 의거하여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자는 "당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동규칙 제2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3항1의5호에 근거하여 입주가 불가하며, "당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기존 소유주택의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당 아파트"의 공급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위약금 등의 모든 불이익의 책임은 청약 당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구분	내용
공급기준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p>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 당 아파트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으로만 구성되어 청약부금 통장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 당 아파트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으로만 구성되어 청약부금 통장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구분	내용																																																																
대상자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p> <p>-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p> <p>■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p> <p>-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p> <p>■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p>																																																																
당첨자 선정방법	<p>■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p> <p>■ ①지역 : 해당시도 거주자(서울특별시) 50% → 기타지역 거주자(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50%</p> <p>※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에 의거 해당 시도에서 경쟁 발생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를 우선하여 선정하며, 우선 공급 낙첨자가 기타 지역 거주자와 재경쟁 시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은 적용하지 않음.</p> <p>■ ②배점</p> <table border="1" data-bbox="309 523 2132 1264"> <thead> <tr> <th rowspan="2">배점항목</th> <th rowspan="2">총배점</th> <th colspan="2">배점기준</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기준</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100</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3">미성년 자녀수(1)</td> <td rowspan="3">40</td> <td>4명 이상</td> <td>40</td> <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 </tr> <tr> <td>3명</td> <td>35</td> </tr> <tr> <td>2명</td> <td>25</td> </tr> <tr> <td rowspan="3">영유아 자녀수(2)</td> <td rowspan="3">15</td> <td>3명 이상</td> <td>15</td> <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 </tr> <tr> <td>2명</td> <td>10</td> </tr> <tr> <td>1명</td> <td>5</td> </tr> <tr> <td rowspan="2">세대구성(3)</td> <td rowspan="2">5</td> <td>3세대 이상</td> <td>5</td> <td>-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td> </tr> <tr> <td>한부모 가족</td> <td>5</td> <td>-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td> </tr> <tr> <td rowspan="3">무주택기간(4)</td> <td rowspan="3">20</td> <td>10년 이상</td> <td>20</td> <td rowspan="3">-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td> </tr> <tr> <td>5년 이상 ~ 10년 미만</td> <td>15</td> </tr> <tr> <td>1년 이상 ~ 5년 미만</td> <td>10</td> </tr> <tr> <td rowspan="3">해당 시도 거주기간(5)</td> <td rowspan="3">15</td> <td>10년 이상</td> <td>15</td> <td rowspan="3">-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td> </tr> <tr> <td>5년 이상 ~ 10년 미만</td> <td>10</td> </tr> <tr> <td>1년 이상 ~ 5년 미만</td> <td>5</td> </tr> <tr> <td>입주자저축가입기간(6)</td> <td>5</td> <td>10년 이상</td> <td>5</td> <td>-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td> </tr> </tbody> </table> <p>※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p> <p>(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p> <p>(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p> <p>※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p> <p>*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p> <p>*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p> <p>*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p>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li> </ul> </li> <li>■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li> </ul> </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li> <li>-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li> </ul> </li> </ul>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당첨자 선정 순서</b>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li> <li>■ ①<b>지역</b>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li> <li>■ ②<b>가점</b>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li> </ul> </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가점항목</th> <th style="width: 15%;">가점상한</th> <th style="width: 15%;">가점구분</th> <th style="width: 10%;">점수</th> <th style="width: 15%;">가점구분</th> <th style="width: 10%;">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9">①무주택기간</td> <td rowspan="9">32</td> <td>만30세 미만 미혼자</td> <td>0</td> <td>8년 이상 ~ 9년 미만</td> <td>18</td> </tr> <tr> <td>1년 미만</td> <td>2</td> <td>9년 이상 ~ 10년 미만</td> <td>20</td> </tr> <tr> <td>1년 이상 ~ 2년 미만</td> <td>4</td> <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 <td>22</td> </tr> <tr> <td>2년 이상 ~ 3년 미만</td> <td>6</td> <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 <td>24</td> </tr> <tr> <td>3년 이상 ~ 4년 미만</td> <td>8</td> <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 <td>26</td> </tr> <tr> <td>4년 이상 ~ 5년 미만</td> <td>10</td> <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 <td>28</td> </tr> <tr> <td>5년 이상 ~ 6년 미만</td> <td>12</td> <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 <td>30</td> </tr> <tr> <td>6년 이상 ~ 7년 미만</td> <td>14</td> <td>15년 이상</td> <td>32</td> </tr> <tr> <td>7년 이상 ~ 8년 미만</td> <td>16</td> <td></td> <td></td> </tr> <tr> <td rowspan="4">②부양가족수</td> <td rowspan="4">35</td> <td>0명</td> <td>5</td> <td>4명</td> <td>25</td> </tr> <tr> <td>1명</td> <td>10</td> <td>5명</td> <td>30</td> </tr> <tr> <td>2명</td> <td>15</td> <td>6명 이상</td> <td>35</td> </tr> <tr> <td>3명</td> <td>20</td> <td></td> <td></td> </tr> <tr> <td rowspan="8">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td> <td rowspan="8">17</td> <td>6개월 미만</td> <td>1</td> <td>8년 이상 ~ 9년 미만</td> <td>10</td> </tr> <tr> <td>6개월 이상 ~ 1년 미만</td> <td>2</td> <td>9년 이상 ~ 10년 미만</td> <td>11</td> </tr> <tr> <td>1년 이상 ~ 2년 미만</td> <td>3</td> <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 <td>12</td> </tr> <tr> <td>2년 이상 ~ 3년 미만</td> <td>4</td> <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 <td>13</td> </tr> <tr> <td>3년 이상 ~ 4년 미만</td> <td>5</td> <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 <td>14</td> </tr> <tr> <td>4년 이상 ~ 5년 미만</td> <td>6</td> <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 <td>15</td> </tr> <tr> <td>5년 이상 ~ 6년 미만</td> <td>7</td> <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 <td>16</td> </tr> <tr> <td>6년 이상 ~ 7년 미만</td> <td>8</td> <td>15년 이상</td> <td>17</td> </tr> <tr> <td>7년 이상 ~ 8년 미만</td> <td>9</td> <td></td> <td></td> </tr> </tbody> </table>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③<b>청약통장 가입기간</b>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li> </ul> </li> </ul>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li> </ul> </li> <li>■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li> </ul>																																																																																																									

구분	내용																																																					
대상자	<p>■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p> <p>■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p> <p>※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1순위 신청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주일 것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규제지역 1순위 청약 불가)</li> <li>-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li> <li>-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li> </ul>																																																					
청약통장 자격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b>청약통장 자격요건</b>을 갖추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li>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b>24개월</b>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b>24개월</b>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 아파트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으로만 구성되어 청약부금 통장의 1순위 사용이 불가합니다.</li> </ul> </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b>24개월</b>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li> <li>-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청약부금으로 민영주택 2순위 청약 시에는 예치금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 규모 청약 가능)</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p> <table border="1" data-bbox="315 624 2069 791"> <thead> <tr> <th>구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p>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p>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당첨자 선정방법	<p>■ <b>당첨자 선정 순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b>청약통장 가입기간</b> → ④추첨</li> <li>-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li> <li>-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li> </ul> <p>■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p> <p>■ ②가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li> </ul> <table border="1" data-bbox="315 1102 2101 1174"> <thead> <tr> <th>구분</th> <th>가점제</th> <th>추첨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초과</td> <td>80%</td> <td>20%</td> </tr> </tbody> </table> <p>-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p> <table border="1" data-bbox="309 1225 2119 1517"> <thead> <tr> <th>가점항목</th> <th>가점상한</th> <th>가점구분</th> <th>점수</th> <th>가점구분</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9">①무주택기간</td> <td rowspan="9">32</td> <td>만30세 미만 미혼자</td> <td>0</td> <td>8년 이상 ~ 9년 미만</td> <td>18</td> </tr> <tr> <td>1년 미만</td> <td>2</td> <td>9년 이상 ~ 10년 미만</td> <td>20</td> </tr> <tr> <td>1년 이상 ~ 2년 미만</td> <td>4</td> <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 <td>22</td> </tr> <tr> <td>2년 이상 ~ 3년 미만</td> <td>6</td> <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 <td>24</td> </tr> <tr> <td>3년 이상 ~ 4년 미만</td> <td>8</td> <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 <td>26</td> </tr> <tr> <td>4년 이상 ~ 5년 미만</td> <td>10</td> <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 <td>28</td> </tr> <tr> <td>5년 이상 ~ 6년 미만</td> <td>12</td> <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 <td>30</td> </tr> <tr> <td>6년 이상 ~ 7년 미만</td> <td>14</td> <td>15년 이상</td> <td>32</td> </tr> <tr> <td>7년 이상 ~ 8년 미만</td> <td>16</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85㎡ 초과	80%	20%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85㎡ 초과	80%	20%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

	<p>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p> <p>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p>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p>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b>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b></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p>- 외국인 직계존속</p> <p>-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p> <p>※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p>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p> <p>-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p> <p>-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p> <p>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p>-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p> <p>-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p> <p>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p> <p>-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p> <p>-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p>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p>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p> <p><b>*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b></p>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p>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p>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 청약신청 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 공급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b>2026.04.09.(목)</b>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이촌 르엘 분양사무실 : 10:00~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li>(현장접수)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북로 2256, 르엘캐슬갤러리, East동 4층 (자양동) (☎02-790-0190)</li> </ul> ※ 현장 접수는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합니다.	
일반 공급	1순위	해당지역 (서울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b>2026.04.10.(금)</b>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li>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li> </ul>
		기타지역 [서울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인천시 거주자)]	<b>2026.04.13.(월)</b> 09:00~17:30			
2순위	<b>2026.04.14.(화)</b> 09:00~17:30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분양사무실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li> <li>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포함) 통장</li> <li>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li> </ul>
제3자 대리신청 시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ul> <p>*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ul> <p>*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p>
<p>※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p> <p>※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p> <p>※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p> <p>※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p> <p>■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p>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li> <li>-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b>이용방법</b>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li> </ul>	
공고단지 청약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li> <li>-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li> <li>- <b>이용방법</b>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li> </ul>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조회방법</b>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li> <li>- <b>조회기간</b> : 2026.04.20.(월) ~ 2026.04.29.(수) (10일간)</li> <li>-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li> <li>-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li> </ul>
	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공일시</b> : 2026.04.20.(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li> <li>- <b>제공대상</b>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li> <li>- * <b>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피밍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피밍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b></li> <li>-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ul>

### ■ 당첨자(당첨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 자격 검증 서류제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간 내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구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서류 제출 방법
당첨자 서류제출 (특별공급 / 일반공급)	2026.04.20.(월) ~ 2026.04.24.(금) (5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촌 르엘’ 분양사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북로 2256, 르엘캐슬갤러리 East동, 4층☎02-790-0190</li> </ul> </li> <li>•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좌측 제출기간은 우편발송일 기준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류제출 방식은 등기우편 접수가 원칙이며, 좌측 서류제출 기간 중 우편발송을 하여야 합니다.</li> <li>※ 당첨유형별 제출서류는 당첨자발표일 이후 분양홈페이지(<a href="https://www.lottecastle.co.kr">https://www.lottecastle.co.kr</a>)를 통하여 안내 예정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li> <li>※ 서류제출 기간 내 미접수 시 계약 포기로 간주되오니, 기간 내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분리된 배우자 서류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li> <li>※ 우편봉투의 “보내는 사람” 란에 당첨 동호수(예비 입주자의 경우 주택형과 예비번호)를 반드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li> <li>※ 서류 보완, 일정 변경 등의 안내가 필요할 경우 청약 시 입력한 전화번호로 연락합니다..</li> </ul> </li> </ul>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특별공급 / 일반공급)	추후 별도 안내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 서류를 접수하며, 아래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3.30.)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단, 서류 접수 기간 중에 팩스 전송으로 적격 여부를 확인받고 계약 시 원본 제출은 가능)

###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검증서류 공통 유의사항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예비입주대상자 포함)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분양사무실을 방문, 청약 신청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반드시 진행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서류제출 기간은 추후 별도 안내예정으로, 별도 안내한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기간 내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추첨 및 계약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자격검증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가 불가합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청약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르거나 관련 내용 확인이 불가할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제출 등으로 당첨 자격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소명자료 관련 추가 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을 진행 할 수 없습니다.
- 소명자료 제출과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으로 청약 신청자가 청약 신청 시 잘못된 정보 기재(연락처, 주소 등)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의 서류는 분양주체에서 6개월간 보관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서류는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합니다.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분양사무실로 사전 통지 후 계약체결 전까지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당일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 자료 제출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미소명시에도 부적격자임이 확인되어야 최종 부적격 처리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해 자격검증이 불가할 경우 단순 계약포기로 간주하여 당첨자로 분류 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자격검증 구비서류 안내

- 모든 제출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단, 서류 접수 기간 중에 팩스 전송으로 적격 여부를 확인받고 계약 시 원본 제출은 가능)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모든 제반 서류 상 등재된 모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은 반드시 표기되어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등 추가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등 본인/대리 발급이 구분되는 서류의 경우 본인 발급용이 아닌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세대주변경,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 자격 확인 공통 제출서류 (특별공급 /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 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li> <li>•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li> </ul>
	○		주택청약자격 서약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양사무실 비치, 인터넷청약(청약홈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li> </ul>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양사무실 비치, 개인정보수집안내(신청자용)</li> </ul>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도: 주택공급 및 유상옵션 계약용(당첨자 <b>본인 발급용에 한함 / 대리인 발급 불가</b>),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li> <li>•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li> </ul>
	○		인감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대조하여 일치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li> </ul>
	○		신분증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제출)</li> <li>※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li> </ul>
	○	○	주민등록표등본(전체발급)	본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li> <li>•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li> </ul>
	○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가 재외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제출(주택소유여부 확인)</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 청약이 불가하며,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 전 외국인 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주택소유여부 확인 불가로 부적격될 수 있음)</li> </ul>
	○		주민등록표초본(전체발급)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li> </ul>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li> </ul>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li> </ul>
○	○	복무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군 복무 기간 명시)</li> </ul>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li> </ul>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배정 기준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양사무실 비치</li> </ul>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발급)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정을 인정 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요망</li> </ul>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 된 경우</li> <li>•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됨)</li> <li>※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li> </ul>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li> </ul>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li> </ul>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li> </ul>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국내의료기관으로 한정)과 임신 주차 기재 필수)</li> </ul>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의 경우(분양사무실에 비치)</li> </ul>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li> </ul>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양사무실 비치, 출산특례로 당첨되고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가 기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작성</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li> </ul>
	○		소유주택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의 소유 관계 확인</li> </ul>
노부모부양	○		주민등록표초본(전체발급)	피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었음을 확인</li> </ul>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특별공급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직계존속	※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피부양 직계비속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피부양 직계비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	배우자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	출입국사실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	출입국사실증명서		• 분양사무실 비치, 출산특례로 당첨되고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가 기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작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분양사무실 비치, 출산특례로 당첨되고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가 기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작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	소유주택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의 소유 관계 확인		
일반공급 (가점제당첨자 및 가점제 예비입주자)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청구 방안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	당첨사실 확인서	피부양 직계존속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발급)		• 피부양 직계존속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전체포함하여 발급)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출입국사실증명서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제외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출입국사실증명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발급)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 부양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전세사기 피해자	○	○	임대차계약서 낙찰증빙서류	본인 또는 세대원	해당 임차주택, 사본 제출	전세사기 피해자 낙찰주택(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 받아 소유)을 무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 단, 낙찰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등기사항 증명서 채권자 확인서류		매각허가결정서(경매) 또는 매각결정통지서(공매) 사본 해당 임차주택, 원본 제출	
						- 낙찰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할 경우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①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② 공매로 낙찰받은 경우 :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주택공사가격이 1억 5천만원(수도권 3억원)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li> <li>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li> <li>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li> <li>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 사항 반드시 제출 :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①,② 모두 반드시 제출)</li> <li>※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안됨</li> <li>※ 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한 세대원 또는 미성년자녀 중 한명이라도 해외체류 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li> <li>※ 해외에서 발급 받은 모든 서류 및 외국어로 작성된 모든 서류는 공증받은 한국어 번역본 첨부 필수</li> </ul>	
		○	출입국사실증명원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li> <li>※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li> <li>※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li> </ul>	
제3자 대리인 접수 시 추가서류	○		인감증명서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도 : 당첨자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주택공급 및 유상입선 계약 위임용(청약자 본인 발급용)]</li> <li>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li> <li>※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 시 대리인 접수 또는 대리인 계약 불가</li> </ul>	
	○		인감도장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ul>	
	○		위임장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li> </ul>	
	○		신분증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필요)</li> <li>※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li> </ul>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		무주택 소명 자료	해당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등</li> <li>"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사가격 증명원 등)</li> <li>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li> </ul>	
	○		당첨사실 소명서류	해당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li> </ul>	

####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체결 기간	운영시간	장소
당첨자 계약체결	2026.05.02.(토)~05.04.(월) 3일간 [방문 예약제] *추후 분양홈페이지 예약시스템 운영	10:00 ~ 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촌 르엘 분양사무실</li> <li>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북로 2256, 르엘캐슬갤러리 East동 4층</li> </ul>

-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명
분양대금 관리계좌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하나은행	284-910034-73504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계약금 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예시 : 32동 2505호 홍길동 : 322505홍길동, 31동 208호 홍길동 : 310208홍길동)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장소에서 수납 불가)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당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구비 사항
본인 계약 시	<p>① <b>계약금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입금 확인증, 캡처 등)</b>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증빙자료로 활용을 원하는 경우이체확인증 상 송금 계좌주(계약자명) 및 계좌번호 확인 필요            ※대상 : 분양대금, 추가선택품목 (발코니확장, 시스템에어컨)</p> <p>② <b>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b>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 (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p> <p>③ <b>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b>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인감증명서 발급 시 본인발급용(본인 직접 발급)으로 발급(용도 : 아파트 계약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자의 경우 대리인 계약 불가</p> <p>④ <b>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외)</b></p> <p>⑤ <b>정부수입인지</b>            • 전자수입인지 납부증명서 (수입인지 세액기준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구매 및 납부증명서 출력 또는 우체국 및 시중은행에서 구매</p> <p>⑥ <b>'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증빙자료 포함)</b></p> <p>⑦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p> <p>⑧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p>
대리인 계약시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 계약 (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	<p>※ <b>대리계약 시 상기 구비서류와 함께 다음 서류를 추가 제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본인발급용 / 용도 : 주택공급 및 유상옵션 계약 위임용) 및 인감도장</li> <li>• 대리인 신분증, 도장(또는 대리인 서명)</li> <li>•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분양사무실 비치)</li> </ul>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2020.10.27.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로 계약체결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예. 주택공급 및 유상옵션 계약용, 주택공급 및 유상옵션 계약용 위임용 등)

※ 대리인 계약 시에는 인감증명서만 인정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지참한 대리인은 계약을 체결하실 수 없습니다.

### ■ 계약 시 유의사항

구분	내용
당첨자 계약체결기간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를 제출한 당첨자는 당첨 동 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납부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 체결 시 필요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li> <li>•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부적격세대 및 미계약세대 발생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공급합니다.</li> <li>•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 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li> </ul>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의거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주택소유현황, 청약제한 사항 등을 전산검색하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등으로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서류를 미제출 또는 제출 하였으나 확인 필요사항 누락, 생략 등 자격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li> <li>• <b>부적격 통보 및 소명 안내</b>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의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또는 청약제한사항 등이 있는 경우(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음) 및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확인결과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b>사업주체는 유선 또는 대면, 서면의 방법으로 입주대상자에게 부적격 통보하며, 그 통보일로부터 7일의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계약체결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거 부적격당첨자의 청약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적격 당첨자는 분양사무실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분양사무실 비치)' 작성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사전 당첨자를 포함)로 선정을 제한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항에 의거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li> <li>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li> </ol>       ※ 예비입주자의 신청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되며, 동·호수 배정 참여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따른 입주자 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li> <li>2.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제1순위로 공급 신청할 수 없는 자가 제1순위로 공급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li> <li>2의2. 제28조제6항에 따라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점제를 적용 받아 당첨된 경우</li> <li>3.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을 한 번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특례 제외)</li> <li>4. 제54조제1항 각 호의 주택에 당첨된 자가 같은 조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li> <li>5. 제58조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가 당첨일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li> </o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기타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li> <li>•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저축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자(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li> <li>•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원, 거주지역, 거주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부적격 당첨자는 소명기간 내에 소명하여 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li> <li>• 「인지세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추가선택품목(옵션)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서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전매 포함), 추가선택품목에 따른 계약체결 등으로 발생하는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납부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자가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li> <li>•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투기과열지구인 서울특별시 용산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증빙자료 포함)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li> <li>•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 에게 공급합니다.</li> <li>•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지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 및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li> <li>•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도 남은 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5항에 따라 공급합니다.</li> <li>•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li> <li>•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li> <li>•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당첨취소세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5항 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공급합니다.</li> <li>•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li> </ul>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의 알선에 대한 의무는 없으나,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와 금융기관 간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알선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아래는 중도금 대출 알선이 가능한 경우에 관한 안내사항이며,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의 알선, 대출금액·대출조건 및 대출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보장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계약금(분양대금의 20%) 완납 및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과 별도로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출 실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금액에 대해서는 대출취급기관과 체결한 일정에 따라 수분양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이자 후불제 조건이 아님)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전체 분양대금 중 중도금 40% 범위 내에서 중도금 용자알선을 제공할 예정이며, 한도에 따라 대출이 불가능한 나머지 중도금은 약정된 기일 내에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주체에서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 가능 여부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 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지정된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대출 불가 사유로 공급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대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대출의 제한 및 전입의무 부과 등 제약은 계약자가 면밀히 검토 후 대출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는 이에 대해 확정적인 안내를 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전화상담 포함)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 비용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기준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급대금을 계약자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대출 한도 및 금리 등 조건 변경을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거나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이와 관련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불과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 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수입인지 구매 안내

구분	계약서 기재 금액	총 납부 금액	계약자 부담 금액	비고
아파트 분양 계약 및 유상 옵션 계약	10억 초과	350,000원	175,000원	전세대 공통

※ 수입인지 구매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

- 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단,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최초 분양계약에 한하여 인지세의 1/2을(연대 균등 각각 50% 납부) 부담하며, 최초 분양계약 후의 거래(분양권 전매 포함) 등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계약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 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우체국, 은행)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http://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결제원(☎1577-550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 (적용) 공유지분이 아닌 전체를 상속받은 경우(단독상속)와 상속이 아닌 증여 등은 적용되지 않으며, 세대원에게 처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 후 일부증여 등으로 지분비율이 변경된 경우 일부 증여분은 상속으로 취득한 공유지분이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0.11.19.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변경에 의거 주택의 공유지분 50%를 소유하고 있는 부친의 사망으로, 자녀가 공유지분 50%를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부적격자 통보 이전에 처분한 경우에도 무주택 인정)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 (적용) 청약신청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 및 거주(주민등록표에 등재)한 상태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세대원 전체가 이주할 필요는 없으며, 청약신청자만 이주하면 됨)한 상태여야 인정됩니다. 2호 다목의 경우 최초 등록기준지는 청약신청자의 본적지를 의미하며, 상속 외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 (적용) 개인주택사업자란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로서 해당업무분야에 주택판매나 분양목적으로 기재된 자를 말하며, 건설이 아닌 매입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개인주택사업자를 폐업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적용) 매입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적용) 20㎡ 이하의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분소유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 ☞ (적용) 공공임대주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이 아니라 청약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 (적용) 멸실의 경우에는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여서 멸실되었다는 증빙이 필요하며,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하는 경우에는 위반건축물이라는 증빙(지자체 과태료 부과 등)이 필요합니다.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 (적용) (1) 해당 지자체로부터 당시의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이라는 확인서 또는 민원회신 등을 받아오거나, (2) 청약신청자가 직접 조문에 따른 건축물임을 입증(건축 당시 도시지역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당시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었다는 사실은 재산세 부과 내역서 상의 면적으로, 당시에 그 지번에 주택이 건축되었다는 사실은 국립지리원의 항공사진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p>☞ (적용)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봅니다. (분양권가격은 계약서상의 공급가격으로 산정) 소형저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공동명의로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2호 이상 보유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p> <p>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p> <p>☞ (적용) 주택형(타입)을 기준으로 청약접수결과 경쟁 발생 : 정당계약자 및 미계약 세대 추가 계약자 모두 주택소유로 인정 주택형(타입)을 기준으로 청약접수결과 미달 발생 : 정당계약자 주택소유, 잔여세대 추가계약자 주택 미소유</p> <p>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p> <p>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p> <p>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p> <p>☞ (적용) 주택공급 신청자 및 그 세대원이 제출하는 임대차 계약서, 낙찰 증빙서류 등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하며 주택 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봅니다.</p> <p>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p> <p>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p> <p>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p> <p>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p> <p>☞ (적용)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만 해당되고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실거래 신고한 취득가격이 기준, 2024년 취득한 주택으로 해당 주택의 등기 접수일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만 해당됩니다.</p>
--	---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li> <li>-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부적격당첨자)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 관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부적격당첨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li> <li>- 사업주체는 부적격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li> <li>1.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li> <li>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li> <li>• 부적격당첨자는 분양사무실 또는 별도 계약장소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및 계좌부활요청서'(현장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부적격당첨자명단 통보가 가능합니다.</li> <li>•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li> </ul>
--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3년(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li> <li>• 또한 「주택법」 제6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본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이 주택은 최초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는 「주택법」 제64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한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포함한다)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으로 부기등기 될 예정입니다.</li> <li>• 전매금지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전매자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li> <li>•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li> </ul>
--

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불법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거주의무에 관한 사항** (「주택법」 제57조의2 및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본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은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주택법」 제57 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2년이 적용됩니다.
- 「주택법」 제57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까지 거주의무 유예가 됩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함이 없이 거주의무기간 내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아파트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거주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아파트의 매입비용을 지급한 때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법」 제57조의2에 따라 본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이 주택은 「주택법」 제57조의2 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함”이라는 내용으로 부기등기 될 예정입니다.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③항24호)

- 이중당첨자, 본인 중복신청/당첨자, 부적격 재당첨자 처리 기준
  1.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은 불가합니다)]
  2.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간 특별공급 및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대한 중복청약이 가능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1.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청약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등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 또는 분양일정상 계약한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 세대는 당첨유형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관계기관의 전산검색결과 수신현황 및 입주대상자의 자격확인절차 등 분양일정상 계약완료 이후 일정시점(중도금 1회차 납부 전)까지는 사업주체의 입주 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자체점검, 재검수 등으로 인하여 부적격사항 확인 시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현장점검으로 불법전매, 부정청약,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 적발시 계약완료 상당시간 이후(입주 전까지)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9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 계약

-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며, 체결일, 제공품목, 납부금액 및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일자는 추후 통보함)
- ※ 당 아파트는 준공이 임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의 최초계약기간 외에 추가 및 변경 계약이 불가합니다.(계약서상 해제사유가 인정되는 해제 제외)

### ▣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		100	106	117	118	122
발코니 확장 공사비		11,860,000	11,851,000	13,697,000	10,410,000	16,456,000
계약금 (10%)	계약시	1,186,000	1,185,100	1,369,700	1,041,000	1,645,600
잔금 (90%)	입주지정일	10,674,000	10,665,900	12,327,300	9,369,000	14,810,400

###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2026년 2월말 기준 공정률 62.21%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 주택으로 공급되며,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 기준으로 시공되며, 사업주체에게 발코니 비확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분양가상한제 심의에 따른 금액으로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기준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아파트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등의 증가비용을 감안하여 정산된 금액입니다.
-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해 마감 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의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제46조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계약하는 별도계약 품목으로 공동주택 분양가에는 미포함 되어 있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사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 제조사와 모델, 색상, 디자인 등이 실 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동질 또는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달로그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타입, 위치, 수량 등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발코니 창호, 유리창 표면, 벽체 기타 확장 부위는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수분양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 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 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창호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 세대가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천장 돌출, 벽체 돌출, 우물천장 디자인 변경, 조명 위치 변경, 일부 배관노출 등의 마감 상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부위의 경우 외부창은 단창으로 설치되며, 외부측 벽체 및 일부 천장에 결로방지를 위해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 되어질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고,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환기 덕트 포함)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포함 품목은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 유리 창틀 손잡이 모양 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 입찰결과에 의해 제조사 및 브랜드 개폐 방향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생기는 침실 또는 거실 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창문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 높이 확보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선택품목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	설치위치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제조사
100	전실(실내기 5대 : 거실, 주방/식당, 침실1, 침실2, 침실3)	10,500,000	1,050,000	9,450,000	LG전자
106	전실(실내기 5대 : 거실, 주방/식당, 침실1, 침실2, 침실3)	10,500,000	1,050,000	9,450,000	
117	전실(실내기 6대 : 거실, 주방/식당,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11,800,000	1,180,000	10,620,000	
118	전실(실내기 6대 : 거실, 주방/식당,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11,800,000	1,180,000	10,620,000	
122	전실(실내기 6대 : 거실, 주방/식당,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11,800,000	1,180,000	10,620,000	

- 시스템에어컨은 발코니 확장 계약시 선택이 가능한 유상옵션입니다.
- 주택형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배관 위치,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 높이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사 진행 중 인 현장 여건 관계상 시스템에어컨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천정가막 내부에 유상옵션 설치를 위한 시스템에어컨용 냉매배관이 기본설치되며, 상기 공급금액은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옵션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냉매배관 및 응축수배관이 노출 시공됩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및 잔금	하나은행	284-910036-55004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 상기 계좌는 추가 선택품목 대금 납부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 및 잔금 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예시 : 32동 2505호 홍길동 : 322505홍길동, 31동 208호 홍길동 : 310208홍길동)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 장소에서 수납 불가)
-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은 공동주택 분양계약 시 판매 진행되며, 계약내용, 납부일정, 납부계좌 및 제품 관련사항 등은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주택형별 유상옵션의 상품구성 및 위치, 형태 등이 상이하므로 유상옵션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형의 유상옵션 품목은 설치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선택 등)의 가격은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은 시공상의 일정관계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급계약에 부수되는 마감공사 관련으로 소요 자재를 선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하고, 특히 계약 이후에는 계약 해제, 변경 시 원상회복, 변경공사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단, 수분양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경우 사업주체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계약은 본 아파트 계약 해제사유와 동일하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함께 해제됩니다.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총 유상옵션 금액의

- 10%는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됩니다. (단,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착수일(공사업체 및 자재선정 등의 업무 포함) 후에는 사업주체는 위약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사업주체의 귀책으로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선택품목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사업주체는 수분양자에게 총 옵션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합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계약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계약 대금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소비자 상대업종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1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 미시행

※ 본 아파트는 2026년 2월말 현재 공정을 62.21%로 국토교통부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및 이에 따른 국토교통부고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4호 다목에 따라 마이너스 옵션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10 유의 사항 및 단지 내·외부 여건 등**

구분	설계공지내용
공통	• 당첨자는 계약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설계도서 등 현황 등 사업 관련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음.
	• 당 사업장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공동주택 외부에 표현된 도로, 공원, 주차장, 단독주택 등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계획되어 있고, 관련 인허가 변경에 따라 건축계획, 세부 사항 및 면적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당 사업은 기존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입주 후 건축물 구조체의 임의 변경 등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함.
	• 당 사업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리모델링 사업의 특성상 기존 건축물의 배치와 형태 및 기존 세대의 건축현황에 따라 건축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경우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의 변경에 대한 별도 정산은 없음을 충분히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리모델링 사업의 특성상 대지경계선 및 외부의 기반시설(도로, 옹벽, 우/오수관로, 가스, 전력, 지역난방, 통신 관로 및 설비 등)은 기존 시설을 유지하며, 추후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본 사업지의 개발계획(조경, 토목, 옹벽, 기타 구조물 등의 계획 일체)은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이로인해 인허가 변경 등이 수반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개별 동의를 받지 않음.
	• 세대당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확정측량 등으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고,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사업계획승인 도서의 세대 및 공용부의 층고 및 SLAB의 두께, 부재간의 안목치수, 층고 및 천정고 등은 기존 건축물의 존치구간에 연결하여 확장 시공하는 리모델링 사업의 특성상 사업계획승인 도서의 치수 증감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 주변 현황 및 현장 여건, 주변 개발, 조광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준공시 경계(분할)측량 후 대지면적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면적상의 대지지분이 변경될 수 있음.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로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함.
	기반 시설 등
단지 주변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동측에 폭 50M도로(동작대교 고가차도), 고가차도 하부 공영주차장 및 종교시설 주차장이 위치하며, 지하철 4호선 지상 고가철도가 위치함. 고가차도 하부로는 9.5M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해당 도로와 인접한 구역경계 내측에는 보도 및 공공공지와 연계된 보행공간이 계획 되어있으며, 해당 도로에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신설될 예정임. 해당 도로변에는 별도의 방음시설 및 난간대가 설치되지 않고 보도블록 및 시설을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도로에 인접한 주동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단,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 시설물(방음벽, 난간대, 녹지형 방음시설 등) 설치될 수 있음.</li> <li>• 단지 남측에 폭 25M도로(이촌로)가 계획 되어있으며, 해당 도로는 단지 남동측의 지하차도와 연결되어 있음. 해당 도로 위 단지 11동과 21동 사이 단지 차량 주출입구1에는 횡단보도가 이설 될 예정임. 해당 도로 및 이와 인접한 구역경계 내측 일부구간에는 보도 및 자전거전용도로가 계획 되어있음. 해당 도로변에는 별도의 방음시설 및 난간대가 설치되지 않고 보도블록 및 시설을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도로에 인접한 주동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 시설물(방음벽, 난간대, 녹지형 방음시설 등) 설치될 수 있음.</li> <li>• 단지 서측부터 서북측 단지 경계부에는 투시형 담장이 설치될 예정이고, 주변 일부 구간에는 5.6M도로(이촌로89길)가 위치함. 해당 도로의 당 사업지 북측에 인접한 종교시설측 구간과, 당 사업지 서측에 인접한 이촌어린이공원으로 보행자 출입구가 설치될 예정임.</li> <li>• 단지 북측에 경의선 지상철 철도, 40M도로(서빙고로) 및 동작대교 진입부 고가차도가 계획 되어있고, 방음벽이 설치될 예정임. 이로 인하여 해당 시설물에 인접한 주동 세대는 시야 간섭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단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 도서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선형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li> <li>• CG, 모형 등에 표현된 단지 외부의 주변 도로 등은 현재 상황 또는 설치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li> <li>• 단지 주변 도로 및 대지경계선 밖 도로는 단지내 소유가 아니며, 실시공 시 형태, 높이, 레벨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음.</li> <li>• 단지 내 투시형 담장, 방음벽 등 시설물은 시설물의 설치 위치, 형태, 높이, 너비 및 재질 등은 관련 인허가 및 실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li> </ul>
단지 주변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 사업구역 동남측의 근린생활시설 '라'동 상가는 금번 사업에서 제외된 구간으로, 해당 상가 및 입점사의 운영에 따라 인접 세대에 소음,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당 사업구역 주변 동측부터 동남측 인근에는 동빙고 근린공원이 위치하며, 해당 공원 내 청소년 수련시설은 기 조성되었고 운동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등이 추가 조성될 예정임. 해당 근린공원과 관련한 조성계획 및 조성공사 진행경과는 당 사업구역과 무관함. 해당 근린공원 이용자 및 진행 중인 공사로 인해 인접 세대에는 프라이버시 침해 등 사생활 침해 및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당 사업구역 주변 동측과 서북측 인근에 종교시설이 위치하여, 인접 세대에는 프라이버시 침해, 조망간섭 등 사생활 침해 및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당 사업구역 주변 남측에 의료시설이 위치하여, 인접 세대에는 프라이버시 침해, 조망간섭 등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냄새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당 사업구역 주변 남측에 이촌한우리공원이 위치하여, 인접 세대에는 프라이버시 침해 등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당 사업구역 주변 남측, 남서측, 서측에는 기 조성된 공동주택 단지들이 위치하여, 각 단지별 주 동 배치 및 층수 등에 따라 인접 세대에는 프라이버시 침해, 조망간섭 등 사생활 침해 및 소음, 조명 등으로 인한 빛공해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ul>
대지 경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2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대지지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li> <li>• 당 사업장은 공부상 대지면적 37,899㎡ 중 단지 동측에 공공공지 1,078㎡를 기부채납하여 실사용 대지면적 36,821㎡로 사업계획승인을 득 하였음.</li> </ul>
인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 사업은 2017년 11월 최초 건축심의를 신청 및 2019년 8월 최초 사업계획승인을 득 한 사업장으로, 경과규정의 적용 가능한 법적기준(창호 및 벽체의 단열 성능 기준 등 친환경 관련 사항 포함)에 대해서는 최초 심의 및 인허가 접수일 혹은 완료일 당시의 기준을 준수함.</li> <li>• 당 사업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관련 법규 및 인허가 등에 따라 건축선 지정, 견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및 바닥구조 등과 관련된 사항을 완화 또는 적용의 배제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일부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조망간섭, 일조권 침해 등 사생활 침해 및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당 사업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당 사업 전체 전용면적의 증가를 위하여 단지 동측 및 남측에는 심의 조건에 따라 담장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li> <li>• 당 사업장의 주민공동이용시설(커뮤니티시설) 중 스카이카페, 키즈실내놀이터 등은 지역개방 적용 대상 시설로써 단지 입주민 외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인접한 주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li> <li>• 당 사업장의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심의를 통해 발코니길이 삭제비용을 완화 받았음.</li> <li>• 공동주택 분공사 시,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등 인허가 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분양 후 설계변경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고지 및 별도 동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인허가 절차상의 각종 인증 및 심사를 통해 일부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고지 않음.</li> <li>• 분양 시 계획된 야간경관조명 계획은 서울시 좋은빛 심의의견 및 경관심의의견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li> <li>•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건본주택(모델하우스, 사이버모델하우스), 단지 배치, 단지 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자 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li> <li>• 당 사업장은 서울시 건축물 심의 기준에 따라 전용 122타입은 층수에 따라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 변화가 계획되어 있으니 관련 도면을 확인하시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li> <li>• 장애인 점형 블록 등 장애인편의시설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li> <li>• 당 사업장은 커뮤니티시설을 포함한 부대복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평면 변경을 수반하는 설계변경이 예정되어 있음. 해당 설계변경 관련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음.</li> </ul>
건본 주택 (사이버 모델하우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본주택은 사이버모델하우스 VR로 100㎡ 타입을 구현하였으며, 실감도 높은 공간 연출과 실제 마감재를 반영한 고품질 CG로 제작되었음.</li> <li>• 건본주택(사이버모델하우스 포함)으로 구현된 세대와 실세대는 단지배치에 따라 좌우대칭 구조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li> <li>• 건본주택(사이버모델하우스 포함)으로 구현된 세대에는 기본품목, 전시품목이 혼합으로 연출되어있으며, 실제 시공은 사업승인도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li> <li>• 건본주택(사이버모델하우스 포함) 및 분양 홍보물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길 바람.</li> <li>• 건본주택(사이버모델하우스 포함) 및 분양 홍보물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하게 표기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li> <li>• 건본주택(사이버모델하우스 포함) 및 분양 홍보물에서 제시된 마감자재 및 설치 제품은 자재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동질 또는 동급 이상의 다른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음.</li> <li>•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컷(CG)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청약 및 계약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 바라며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건립 타입(사이버모텔하우스 미구현 타입 포함)은 홍보물을 참고하시어 계약 전에 평면 형태 및 가구배치, 실면적, 마감재 등 건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li> <li>• 단위세대 마감재는 각 타입에 따라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의 디자인에 맞춰 시공되며 별도의 선택이 불가능 함.</li> <li>• 단위세대 건립타입(사이버모텔하우스 구현 타입 포함)의 내부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조명은 직부등 및 매립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출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음.</li> <li>• 단위세대에 설치된 조명, 스위치, 통신-제어기기 등은 사양 및 위치가 변경되거나 등급 제품으로 대체될 수 있음.</li> <li>• 단위세대 침실에 설치된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은 법규에 의거해 관리가 용이한 노출된 장소에 설치되며, 입주 후 개인의사정에 따른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li> <li>• 건본주택(사이버모텔하우스 포함)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구현되어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시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람, 발코니 외부 창호, 발코니 내부 분합창호, 세대 내 목창호, 각종 가구, 유리,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본 공사 시 건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li> <li>• 건본주택(사이버모텔하우스 포함) 내부에 설치된 시스템어컨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실제 시공 시 상세 위치 및 사양은 변경될 수 있음.</li> <li>• 건본주택(사이버모텔하우스 포함)으로 구현된 단위세대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와 벽체에 설치된 경보기 등은 건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로서 본 시공 위치와 사양 등이 상이할 수 있음.</li> <li>• 건본주택(사이버모텔하우스 포함)으로 구현된 단위세대에 안내된 우수 배관, 선홍통, 수전, 환기 디퓨저, 온도조절기, 바닥배수구 등의 위치는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ul>
분양 홍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양홍보에 사용된 카달로그 및 각종 인쇄물, 기타 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조경도, 주민공동시설 및 단위세대 입체도와 평면도 등),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 또는 촬영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또한,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li> <li>• 분양홍보에 사용된 카달로그 및 각종 인쇄물, 기타 홍보물에 삽입된 CG 등에 표현된 옥상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축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조경 식재, 단지 내 조경, 바닥포장, 어린이 놀이터 및 단지 문주 등 각종 시설물, 주민공동시설 등의 평면 계획 및 인테리어 계획, 단지 고저차, 각종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또한,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li> <li>• 분양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사업계획(변경)승인 도서에 준하며, 청약 및 계약 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람,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하오니 이 점 양지 하시기 바람. 단, 건축 관련 도서는 열람만 가능하며, 복사 등은 불가하오니 양지 하시기 바람.</li> <li>• 분양 홍보물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및 시공 과정상 경미한 설계변경이 될 수 있고 시공 시 다소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음. 또한, 분양 홍보물 상 단지를 제외한 기타 사항(개발계획, 주변건물 현황, 산, 조경, 외부식재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건본주택(사이버모텔하우스 포함)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람.</li> <li>•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CG, 일러스트, 이미지컷 및 개요 등)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 및 예비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건본주택(사이버모텔하우스 포함)을 확인 확인하시기 바람, 또한 홍보과정에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계획 또는 예정사항은 추후 관련 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하오니, 관련 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한 후 계약을 하여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됨.</li> <li>•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아파트 공급계약 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li> <li>• 본 제작물은 광고·홍보물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고 현장을 꼭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람.</li> <li>•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홍보물(카달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 오타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 될 수 있으니 건본주택(사이버모텔하우스 포함)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길 바람.</li> <li>• 설계도서와 분양홍보물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실제 시공은 최종 사업계획(변경)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시공됨.</li> <li>• 안내물에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안내물의 기준이며,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li> </ul>
외관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 단지의 주동외관색채, 외벽줄눈 특화외장재의 종류 및 적용위치, 옥상구조물의 형태 및 마감재, 옥상 태양광집광판의 위치 및 각도, 옥상 난간의 형태 및 재질, 주동 출입구의 형태 및 마감재, 단지 출입구 문주의 형태 및 마감재,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디자인, 옥탑장식물, 물딩, 창틀모양 등) 등 단지 외관의 전반적인 디자인이 사업주체 결정에 따라 착공도서, 사업계획(변경)승인 도서 및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계획(안) 대비 디자인개선을 목적으로 변경 및 추가되어 시공될 수 있음.</li> <li>• 단, 인허가 과정상 협의의견 및 본공사시 디자인 개선을 목적으로 추가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개인의 취향에 따른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li> <li>• 또한 주동 외관 색채는 자재의 특성상 균일한 무늬, 패턴, 색상, 베인으로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자재의 균일한 무늬, 패턴, 색상, 베인이 아닌 자재 자체의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 한정함.</li> </ul>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 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li> <li>•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li> <li>• 당해 사업에 사용된 시공사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람.</li> <li>• 동·호수 당첨 시 동일한 주택형 및 평면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계약 전 세대 내부 배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음.</li> <li>• 배지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li> <li>• 계약 이후 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li> </ul>
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품질 시공을 위하여 선시공세대(현장 내 실물 크기 모형)로 시공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아파트의 면적은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의 범위 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동별 주동 출입구는 동별 특성에 따라 디자인 및 높이, 폭, 동선 등이 상이하며 주동 출입구의 형태, 외측벽선에서 돌출된 구조로 인해 인접세대에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 단지는 리모델링 단지로, 리모델링 여건에 의해 주 동의 지상 계단실이 지하까지 연결되지 않는 동이 있으며, 이로 인해 경우에 따라 지상부에서 지하주차장 출입 시 주변 별도 계단실을 이용하는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공사 시, 시공여건 고려 혹은 디자인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로 및 패턴디자인, 옥상장식물, 창틀모양 등), 지하출입구, 선근, 외부시설물(난간디테일, 문주, 천창, 드라이에어리어 DA 등), 조경디자인(식재, 시설물, 구조물, 조경바닥패턴 등), 주차장 구조체 공법 (DECK PLATE 또는 PC공법)은 본공사 시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해 경미한 변경 등 인허가 절차를 통해 위치, 디자인, 구조, 높이, 형태, 재료, 재질, 색채 등이 부위별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 및 의견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동의 벽체 및 동출입구부, 부대시설은 지정석재, 지정도장 마감,지정금속 마감 등 혼합마감이며, 일부 주동의 특정 구간에는 커튼월록 등 특화입면이 적용될 수 있음. 단, 외관 디자인 변경으로 인한 인허가 진행시 외부 입면 마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재료의 색상 및 디자인은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로티 내부에 기둥, 벽체 등은 지정석재, 지정도장, 지정타일, 지정금속 마감 등으로로 시공예정이며, 동별 여건에 따라 마감재 적용 부위 및 부위별 마감재 색상이 상이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후 옥외광고물 심의(자문) 및 좋은빛심의(자문)에 따라 조명계획이 변경 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주변도로, 단지 내 차로 및 비상차로, 지하주차장 출입구, 지상주차장, 단지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각종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동의 저층부 세대는 단지 주변도로, 단지 차량 출입구, 단지내 차로 및 비상차로, 문주, 지하주차장 출입구(램프), 동출입구, 부대복리시설, 가로등, 진출입 차량의 전조등 등에 의해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의 등의 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빔공해 저감을 위하여 일부 차폐형 식재, 시설물이 설치되는 경우 세대의 일조와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단, 일부 세대는 소방안전매트 구간과의 간섭, 소방차 부서 공간 등 각종 서비스 차량동선의 간섭으로 인하여 빔공해 저감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 단지의 부대복리시설 중 32동의 스카이라운지, 34동의 키즈실내놀이터는 관련 인허가 및 심의에 따라 지역개방 적용 대상 시설물로서 임의로 폐쇄할 수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주택 옥상부에 의장용 구조물, 태양광설비(집광판.인버터), 공용TV안테나, 이동통신안테나, 피리침, 경관조명, 인명대피공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눈부심, 소음, 진동,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특히, 안테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동통신설비 구축을위해 옥탑에 설치되며, 추후 이로인한 사생활 침해 등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 단지 내 레벨이 상이하여 단차가 생기는 구간에 대해서는 조경석쌓기, 화계, 옹벽, 사면처리 등이 계획될 수 있으며, 카달로그 및 모형, CG등 분양 홍보물에 표현된 조경석, 옹벽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시공사 아파트의 현장여건 등에 따라 구간, 높이 등의 계획이 상이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내 옹벽, 조경식재, 마운딩, 플랜터 등 구조물 구성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조망, 일조에 침해가 있을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경시설은 수질관리를 위하여 상수가 연결 될 예정이며, 수경시설 가동에 따른 관리비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관련한 내용은 입주 후 관리규약에 따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내 설치되는 수경시설에는 수질 정화를 위한 장치가 설치되며, 물놀이 시설이 아닌 관상용 시설이므로 별도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경시설과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주동 측벽 및 옥상부에는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에 준하여 태양광집광판 구조물이 설치되어 공용부 전력으로 활용되어질 예정이며, 빛반사 등에 의한 눈부심 및 풍음, 태양광인버터 장비소음 등이 일부세대에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태양광 집광판의 설치위치 및 각도는 향후 본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내 조경식재, 야간조명 및 홈네트워킹설비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후 관리규약에 따르며 조경공간의 개선을 위하여 시설물 계획이 추가 계획 될 경우 이로 인한 유지, 보수, 관리비가 발생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내 설치되는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주민공동시설 및 단지 내 공지, 수경시설, 소방도로, 보행가로변, 주차관제 출차주의, 공공보행통로에 인접한 세대에는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상부에는 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옥상녹화나 세대 미관 개선을 위한 인조잔디가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의 상부는 거주자 이용 불가한 공간임. 단, 출입을 위한 유지관리용 출입문이나 옥외사다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및 현장여건에 따라 디자인 및 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선형, 폭, 경사 및 식재계획, 포장계획, 시설계획 등 전반적 조경계획은 상품 개선을 위해 변경될 수 있음. 인허가와 관련된 주요 공간(놀이터, 운동공간, 쓰레기분리수거함, 소방정차구간 등)의 위치는 크게 변경되지 않으나 그 외 공간별 규모, 형태, 시설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와 무관한 일반 공간(휴게공간, 보행자전용동선 등)의 계획은 위치를 포함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조경계획의 개선안이 입주자의 개인취향 및 의견과 상충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시를 위해 공기안전매트는 통합경비실에 비치되며, 단지 내 공기안전매트 설치가 권장될 경우 해당 구간에 식재가 제한되어(교목 및 관목 식재 불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가로경관에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단지내 각종 인입(상·하오수, 도시가스, 한전 등)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소방 전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선구간에는 잔디블록이 적용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 출입구를 제외한 단지 내 도로는 비상차로로 입주 후 단지운영에 따라 우편물 차량, 택배, 이삿짐, 구급 차량 등이 단지내 비상차량 동선을 통해 진입할 수 있음. 단, 지하주차장에 택배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유효고를 적용함.</li> <li>• 일부 단지 내 도로는 경사에 따라 장애인의 통행에 불편할 수 있음.</li> <li>• 우편물보관함은 지상1층 각 동 출입구 내부 공용홀에 설치되며, 각 동별로 위치 및 규모는 상이할수 있음.</li> <li>•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입주 시 단지 바닥 마감, 조경, 창호형태, 입면장식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거실과 침실의 창호가 유리난간이 적용된 조망형 창호이므로 거실과 침실로의 사다리차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상 1층에서부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삿짐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또한, 일부 리모델링 주 동의 경우 기존 구조체(바닥, 벽체 등)를 존치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홀의 유효 천정고가 낮아 이사 중에 가전제품과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각 동 인근 지상1층에는 DA(제연DA 포함), 주차장 급배기그릴 등이 저층부 세대와 인접하여 설치되어 소음, 냄새,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 사생활 침해 및 미관저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단지 내 위치한 DA 및 부대복리시설 실외기실 그릴창호 주변 보행공간은 소음 및 열풍이 발생할 수 있으며, DA의 위치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고,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일부 동은 주변 건물 및 구조물, 기존 건물의 재개발, 재건축 및 증축, 단지 내 인접 동 및 같은 동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지하주차장, 필로티 및 외기에 노출되는 부위에는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함.</li> <li>• 공용부의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건물 외관에 설치되는 LED 조명 등으로 인해 인접세대에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경관조명은 인·허가 과정 및 관련 심의 의견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모든 동에 동일한 형태의 외관 및 경관조명이 설치가 될 수 없음을 양지하고 이에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단지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li> <li>•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li>• 세대별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li> <li>•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 주차장 경사로 등), 어린이집, 조경시설,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단지 주 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 침해, 소음, 빛 공해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경관조명, 위성 안테나, 공청 안테나, 태양광 집광판,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 장애등, 피뢰침, 방공호 및 대공포 진지 군사시설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사업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설계도면에 반영된 공용설비(영구배수, 동 지하 엘리베이터홀 에어컨 등)로 인한 제반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됨.</li> <li>• 지하1층 주민공동시설, 동 하부 지상1층 주민공동시설 및 별 동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창호 및 금속마감, 조명형사인 등에 의해 조망, 눈부심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주거동 옥상의 난간(골조 난간, 유리 난간, 철제 난간 등 난간 일체) 설치영역은 변경될 수 있음.</li> <li>• 주거동 지상 1층 진출입구간에 낙하물 방지 시설물이 추가될 수 있음.</li> <li>• 단지 외부 및 기반시설의 레벨차가 발생하는 구간에 대하여 옹벽 및 화계, 사면처리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모형, CG 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사항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시공사 아파트의 현장 여건, 미관 개선 등에 따라 구간, 높이, 디자인, 재질 등의 계획이 상이할 수 있음.</li> <li>• 단지 내 옹벽, 조경식재, 마운딩, 플랜터 등 구조물 구성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조망, 일조에 침해가 있을 수 있음. 특히, 식재기반조성 및 미관개선을 위해 분양홍보물과 상이한 구조물(플랜터, 마운딩등)이 계획될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일부 저층세대에 일조, 조망 침해가 있을 수 있음.</li> <li>•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재,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은 본공사 시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해 위치, 디자인, 구조, 높이,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이로 인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 소음, 도로로 인한 시야간섭 등의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음</li> <li>• 각 동의 형태 및 동호수 조합에 따라 각 세대에서 인접세대로 시야, 조망 간섭, 소음 등 프라이버시,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아파트 주동 주변에는 소방용 연결송수구가 설치 될 예정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 내력벽으로 변경 될 수 있음.</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등에는 커튼월록, 특화측벽, 측벽 경관조명이 적용될 예정이며, 적용 항목, 적용 위치 및 적용 개소 등은 각 동별로 상이함. 해당 커튼월록, 특화측벽, 측벽 경관조명에 의해 눈부심 및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 디자인, 색상, 재료 및 위치 등은 분양홍보물을 참조하되, 본시공 시 각종 심의 및 인허가 협의 등으로 인하여 디자인, 색상, 재료, 위치 등이 변동 될 수 있음.</li> <li>• 일부 주 동 외부 입면에는 태양광 집광판(BIPV 등)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미관이 저해될 수 있고, 일부세대에 소음 및 진동, 눈부심 및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주 동 지붕층 및 옥탑지붕층에는 태양광 집광판(PV 등)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다리 등이 설치되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음. 태양광 집광판 등 설비로 인해 일부세대에 소음 및 진동, 눈부심 및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단지 지상 1층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진입 가능한 코어(계단실, 엘리베이터)는 7개소 계획되어 있으며, 별도 시설물 또는 부대복리시설 내 계획되어 있음. 해당 시설의 상세 위치는 관련 도면을 확인하시고, 해당 시설로 인해 일부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 및 조망간섭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주 동 지붕층에는 각 세대의 욕실 및 주방의 배기를 위한 동력환이 설치되며, 이로인해 일부 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눈부심 및 빛공해, 조망간섭 등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원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블루투스 연동은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수신거리 및 기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원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연동은 스마트폰의 OS정책에 따라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원패스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는 3년간 무상지원되며, 이후에는 유상으로 변경 됨.</li> <li>• 홈네트워크 서버의 경우 고정IP(전용회선)사용으로 관리 비용이 발생됨.</li> <li>•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에 따라 31동, 32동, 34동 옥상층 옥외안테나가 설치됨. 또한 31동, 32동, 34동 옥상층 / B2F 헬룸, B2F 제연헬룸에 이동통신용 중계장치가 설치됨. 현장의 여건에 따라 안테나 및 중계기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li> <li>• 스마트홈 IoT사업자의 서비스가 적용 될 경우 입주지원기간 종료 시점으로부터 2년간 무상 지원되며, 이후에는 유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li> <li>• 음성인식 스피커는 별도 구매 품목이며 스마트홈IoT 연동 가전제품은 서비스사업자와 제휴된 가전에 한해 가능함.</li> <li>• 외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세대제어 및 정보조화가 가능한 '롯데스마트홈'서비스는 3년간 무상지원되며, 이후에는 유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li> <li>• 월패드, CATV 등에서 확인가능한 단지내 놀이터 CCTV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모든 입주민의 동의를 득한 경우에 한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li> <li>• 근린생활시설 상가는 11동 하부와 21동 하부 지하1층과 지상1층에 설치되며, 해당 상가의 재활용 및 폐기물 보관 및 수거 장소는 단지 내 11동과 인접한 북측 및 21동과 인접한 북측에 설치됨. 이에 따라 주변 세대에는 각종 폐기물로 인한 냄새, 수거 차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전조등으로 인한 빛공해, 조망간섭, 프라이버시 침해 등 환경권 및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단지 지하주차장 지하1층에 위치하여 단지 출입구1로 출입 가능하며, 지하 1층 지하주차장에서 공동주택 주차장 구역과는 차단기로 구분됨. 근린생활시설 이용객 차량이 단지 내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진동, 자동차 전조등으로 인한 빛공해, 냄새 등으로 인한 생활권 및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근린생활시설 이용객이 차량 주차 후 인근 계단실 등을 이용하여 소음, 진동 등 생활권 및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근린생활시설 상가 배기가 11동 및 12동 옥상 최상층으로 인출되어 일부세대 및 입주민은 소음, 조망, 냄새, 조망권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인접세대에는 냄새가 전달될 수 있음. 현장여건 등에 의해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li> </ul>
필로티 및 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동의 지상1층에는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으며, 동 별 필로티 내부계획 및 마감높이는 상이할 수 있음. 일부세대는 소음, 진동, 조망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li> <li>• 각 동의 주동출입구는 1개층 필로티 또는 별도의 주동출입구가 설치됨. 주동 출입구의 내부 계획 및 높이는 코어별 상이할 수 있음.</li> <li>• 일부 동 필로티 내부에 자전거보관소가 및 휴게공간이 설치됨에 따라 일부 통행에 불편이 있을수 있으며, 저층 일부세대 소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또한 설비배관 시공 등으로 인하여 천정에 단차가 발생 가능함.</li> </ul>
문주 및 경비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주는 단지 남측 차량 출입구1 및 출입구2에 계획되어 있음. 주출입구1측 문주 인근에는 별도 경비실이 위치하며, 주출입구2측 문주는 통합경비실과 연계하여 계획되며, 경비실과 인접하여 주차 차단기가 설치되어 외부차량 진입시 차량 대기가 발생 할 수 있음. 단 시공여건 고려 혹은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부위별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 및 의견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li> <li>• 단지 차량 출입구에 설치될 문주 시설물로 인해 일부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소음, 시야간섭,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빛공해,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단지 차량 출입구 문주 계획으로 인하여 보행동선 및 도로선형 등이 일부 조정 될 수 있음.</li> </ul>
단지 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 단지에 총 2개소의 단지 차량출입구(단지 남측 11동과 21동동 사이 및 21동과 31동 사이)가 있으며, 인허가 및 공사과정에서 출입구와 출입 관제시스템의 일부 위치 및 형태, 개소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li> <li>• 단지 차량출입구는 2개소가 설치되며, 11동, 12동, 21동, 22동, 31동의 저층세대는 진출입 차량의 운행 및 전조등에 의해 소음, 냄새,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11동과 12동 사이 구간, 23동 북서측 및 31동과 33동 사이 구간에는 보행자 전용 단지 출입구가 위치하여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조망간섭, 조명 등에 의한 빛공해 및 소음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ul>
공동주택 주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 사업장은 서울시 건축물 심의 기준에 따라 34동의 전용 122타입은 층수에 따라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 변화가 계획되어 있으니 관련 도면을 확인하시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또한, 개방형 발코니 설치 위치에 따라 일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단지내 외부엘리베이터는 31동 북측 1개소, 33동과 34동 사이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통행으로 인한 인접 동의 저층부는 조망권 간섭,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등이 발생될 수</li> </ul>

	<p>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내 외부계단은 11동 북측 1개소, 12동 북측 조식카페 인접 1개소, 21동 북측 1개소, 22동과 23동 사이 1개소, 23동 북측 1개소, 31동 북측 1개소, 33동과 34동 사이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통행으로 인한 인접 동의 저층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11동, 31동에서 지붕층에는 옥상 디자인 구조물이 존재하므로, 주변 세대에 빗공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31동과 33동 옥상 일부 구간에는 옥상조경이 설치될 예정이며, 사업 진행, 인허가 협의 및 현장여건에 따라 디자인 및 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이로 인해 일부 세대는 조망, 소음, 진동, 분진, 시야간섭 등의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있음.</li> <li>• 32동 및 34동 필로티 내부와 그 외 주 동 출입구 인근에 자전거 보관소가 인접하게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 조망권 및 소음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현장여건 및 미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21동과 인접한 북측 구간에는 어린이 통학차량 및 유치원 차량의 주차차 및 승하차를 위한 드랍오프존 및 대기 공간이 조성되며, 인하여 인근에 통행 불편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동의 저층세대에는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어린이 통학차량 주차차공간은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 및 규모, 시설물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해당 공간 내 냉난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li> <li>• 지상1층 음식물쓰레기 외부 투입구 위치는 22동 서측 측벽에 인접하여 1개소, 33동 서측에 1개소로 총 2개소가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세대는 소음 및 냄새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또한 현장여건에 의해 설치위치가 변경 될 수 있음.</li> <li>• B.I 사인물은 11동 서측 측벽에 1개소, 단지 문주 각 1개소, 31동 옥상구조물 전면부 1개소, 32동 스카이라운지 동측면 1개소에 적용될 예정임. BI 위치 및 디자인은 분양홍보물과 모형자료를 참조하되, 본시공 시 인허가 협의 등으로 인하여 위치가 변동 될 수 있음.</li> <li>• 11동, 12동, 21동, 22동, 23동은 계단이 별도의 실로 구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단을 통해 인접 층 세대의 소음 및 냄새 등이 계단을 통해 전달되어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해당 동의 계단측에 설치되는 창호는 환기 등을 위해 프로젝트 창호가 설치되며, 별도의 자동폐쇄장치는 설치되지 않음.</li> <li>• 31동의 코어#2 및 코어#3, 32동, 33동, 34동은 엘리베이터홀 내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호가 설치되지 않음. 이로인해 엘리베이터홀 내 채광, 환기 등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소음 및 냄새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31동 코어#1의 엘리베이터홀 창호는 건축법 및 소방법에 따라 전층 개폐가 가능한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며,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된 창호는 화재 시 연기유입을 막기 위한 공기가압을 위해 자동으로 닫히도록 계획되어 있음.</li> <li>• 건축법 및 소방법에 따라 31동의 코어#1의 계단실 창호는 최상층 1개소, 최하층 1개소 및 중간층 5개층 마다 1개소씩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고, 31동의 코어#2 및 코어#3, 32동, 33동, 34동의 계단실 창호는 전 층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됨. 다만, 그 설치 위치, 크기 등은 본공사시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될수 있음.</li> <li>• 각 동 코어별로 각 층 세대로 진입 가능한 승강기는 1대씩 설치 될 예정이며, 주동 코어별 엘리베이터 계획은 인가도서 계획에 따름. 단, 31동에는 지붕층 옥상조경 출입 전용 엘리베이터가, 32동에는 스카이라운지 및 게스트룸 전용 엘리베이터가 설치 될 예정이며, 해당 엘리베이터는 지상 1층과 각 시설이 위치한 층에서만 정차함. 이로 인해 해당 엘리베이터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34동과 33동 사이에는 선큰이 위치하고, 해당 선큰과 연계하여 지하 1층에는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센터)이 위치하여 일부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해당시설의 메인 출입구로 통행하는 이용객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경로당, 어린이집, 독서실, 작은도서관, 공유오피스는 23동 북측이자 32동 서측에 위치한 별동 부대복리시설 A동에 계획되어 있어 소음 및 진동,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조식서비스라운지는 12동 북측이자 23동 서측에 위치한 별동 부대복리시설 B동에 계획되어 있어 소음 및 진동,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통합관리사무소는 21동과 31동 사이 지하1층에 계획되어 있고, 해당 시설은 선큰과 연계되어 있음. 해당 구간 지상 1층에는 통합경비실로 방재실과 MDF실이 위치하며, 이로 인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및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32동 동 하부 지상 1층에는 용역원휴게실이 위치하여 일부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34동 동 하부 지상 1층에는 키즈실내놀이터가 위치하여 일부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32동 지상 26층에는 스카이라운지가, 지상 27층에는 게스트룸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세대는 시야 및 조망 간섭, 빗공해, 소음, 진동,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단지 내 지상층 시설물 DA는 총 6개소 설치 예정이며, 11동과 12동 사이 서측 구간, 12동 북측 부대복리시설B동 인접 구간, 31동 북측 지하진출입램프구조물 인접 구간, 32동 서측 구간, 33동 서측 주민운동시설 인접구간, 부대복리시설A동 북측 인접 구간에 위치함.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단지 내 공동주택 주 동 지상 1층과 인접한 구간 또는 필로티 내부에 제연휀룸 DA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34동에 인접한 키즈실내놀이터 지붕층에는 지하 1층에 위치한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가 설치되고, 부대복리시설 A동 및 B동의 2층 또는 지붕층에는 해당 시설의 실외기가 설치되어,</li> </ul>
--	--

	<p>일부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 및 조망간섭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동과 22동 사이, 그리고 22동과 31동 및 33동 사이에 지하주차장 램프의 지붕구조물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침해 및 조망간섭, 차량전조등, 주차관제 출차주의 등에 의한 빛공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li> <li>• 21동 북측 인접 구간에는 어린이 통학차량 주차차 공간 및 차량출입구, 지하주차장 램프, 문주 및 경비실이 위치하여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냄새, 조망 간섭, 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단지내 어린이놀이터 2개소, 유아놀이터 1개소가 있으며, 단지 지상1층 외부의 23동과 부대복리시설A동 사이 구간에는 유아놀이터가, 31동과 33동 사이 구간 및 32동과 33동 사이 구간에 어린이놀이터가 각각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해당 시설물에 대한 명칭 및 상세 계획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li> <li>• 단지 지상 1층 22동 서측과 인접한 구간 및 33동 서측 구간에는 음식물 쓰레기 투입구가 계획되어 있어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될 수 있음. 현장여건에 의하여 투입구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li> <li>• 31동 북측 지하주차장 출입 램프 구조물에 인접한 음식물 쓰레기 투입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차량이 음식물을 처리 및 수거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일부세대는 소음, 냄새, 조망 간섭, 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현장여건에 의하여 투입구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li> <li>• 11동과 21동 사이 및 21동과 31동 사이 구간에는 단지 문주가 위치하여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조망간섭, 문주 조명, 차량전조등 및 주차관제 출차주의 등에 의한 빛공해 및 소음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11동, 21동 및 31동 남측에 인접하여 25M 도로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냄새, 조망권 침해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li> <li>• 33동 동측에 인접하여 폭 50M도로(동작대교 고가차도)가 위치하여, 일부세대는 소음, 냄새, 조망권 침해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li> <li>• 단지 출입구에 인접한 11동 북측 및 21동 북측 구간에는 상가 재활용장이 위치하여, 일부세대는 소음, 냄새, 조망권 침해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차량 전조등에 의한 눈부심 등의 빛공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li> <li>• 기타 단지 내 주 동 및 별동 부대복리시설의 배치, 선근 및 각종 시설물의 위치는 계약전 인허가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li> </ul>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지하 3층에서 지하1층까지 총 3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상1층에서 지하1층 지하주차장으로의 차량진출입구는 단지내 총 2개소로, 단지내 12동과 22동 사이 구간 1개소와 22동과 33동 사이 1개소로 계획되어 있음. 차량진입구의 주차차단기 설치로 외부차량 진입시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단지 내 지하주차장내 지하램프는 총 3개소로, 12동과 22동과 23동 사이 구간에는 지상1층부터 지하1층까지, 22동과 23동 사이 구간에는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22동과 31동과 33동 사이 구간에는 지상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이어지는 지하주차장 램프가 계획되어 있음. 차량의 수시 출입으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지하램프를 통해 이동하는 차량으로 인해 일부세대에는 진동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li> <li>• 지하주차장 층별 각 주동의 위치 및 접근, 및 주차 진출입구, 램프의 위치,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관련 공간 계획으로 인해 각 주동별 주차장 이용에 거리와 동선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으며 계약전 필요시 인허가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li> <li>• 각 동 지하층 엘리베이터홀 냉난방을 위한 천정형 시스템어컨용 실외기가 지하주차장에 노출 설치되어 지하주차장의 보행자의 동선 간섭 및 팬가동에 따른 바람 및 열기가 전달될 수 있음.</li> <li>•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본공사 시 용도, 규모, 구조, 동선, 주차면위치, 디자인,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li> <li>• 지하주차장 주차공간은 관계 법령의 경과사항에 따라 직각주차의 경우 일반주차 폭 2.4M, 확장주차 폭 2.5M, 경형주차 폭 2.0M로 계획되었고, 평행주차의 경우 일반주차 폭 2.0M, 경형주차 폭 1.7M로 계획되었으나, 시공오차에 따라 일부 치수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li> <li>• 지하주차장(지하3층~지하1층) 헬룸에 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이 설치되어 차량 및 보행자에게 팬가동에 따른 바람이 전달될수 있으며, 인접주동의 저층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으로 생활권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음. 단,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li> <li>•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하주차장 및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음.</li> <li>•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 될 수 있음.</li> <li>• 주차대수 확보를 위하여 기둥간격이 일부 일정하지 않으므로 일부 주차면은 기둥 및 벽과 간섭되어 차량도어 개폐 및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음.</li> <li>• 단지 특성상 주차장은 지하 3층~지하 1층까지, 주차대수는 총 1,316대 (경차 및 장애인주차, 전기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물조업주차 등 포함, 상가 주차 제외)로 계획되어 있으며, 향후 인·허가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li>• 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 여건에 따라 PC 또는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PIT)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지하 1층에 총 40개소 설치되며, 인허가 과정상 협의 의견 및 본공사시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 및 충전대수는 변경될 수 있음.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지하주차장 주행통로의 높이는 2.3m이며, 택배차량의 이동을 고려하여 지하1층 메인차량동선의 주행통로 높이는 2.7m 이상으로 계획됨. 지하주차장 이용시 택배차량의 정하차로 인해 일부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지하주차장의 배수 트렌치는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li> <li>• 지하주차장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 부족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발전기실/ 전기실/ 저수조 등 각종 기전시설 공간이 지하에 계획되어 있으며, 이와 인접한 인접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지하주차장에는 세대창고실이 있으며, 세대창고는 세대당 1개소가 설치될 예정임. 각 동출입구와 세대창고실은 거리가 상이하며, 일부 세대창고실은 유희공간으로 남아 있을 수 있음. 일부 세대는 본인 세대가 포함된 동이 아닌 다른 동의 세대창고실에 있는 세대창고가 배정될 수 있으며, 습기 등으로 인해 보관 물품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세대 별 세대창고 배정 및 유지 관리는 입주인이 자체적으로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무인택배함은 각 동별 지하1층 주차장 주동출입구 인근에 1개소씩 설치될 예정이며, 각 동별 위치 및 이동거리는 상이함. 지하주차장 주차계획, 동 출입구 동선계획, 현장 시공여건 및 각종 인허가 등으로 인하여 무인택배함 설치 위치는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단지 지하주차장에는 헬룸, 각종 설비 등이 위치한 실의 급배기 DA, 동 통신실, 동 전기실, 제연헬룸,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 수영장 기계실, 펌프실, 우수저류조 및 관리층, 우수저류조 펌프실, 선큰 배수탱크, 음식물쓰레기 중간 기계실, 음식물 기계실 및 관리.제어실, 정화조 및 관리층, 오수탱크실, 조식서비스 화장실 및 오수탱크, 폐기물 보관 창고, 재활용 분리수거장, 창고, 실외기실 등 공동주택 관련 부속실이 위치함. 해당 시설의 상세 위치는 관련 도면을 확인하시고, 해당 시설로 인해 일부세대 및 입주주민은 소음, 조망, 냄새, 조망권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단지 지하주차장에는 상가 전기실, 상가 발전기실, 상가 발전기실 급배기 DA, 상가 화장실 오수탱크, 상가 에어탱크 및 에어컴프레셔실 등 근린생활시설 상가 관련 부속실이 위치함. 해당 시설의 상세 위치는 관련 도면을 확인하시고, 해당 시설로 인해 일부세대 및 입주주민은 소음, 조망, 냄새, 조망권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단지 내 재활용 분리 수거장이 지하1층 각 동 출입구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며, 지하1층 32동 하부에 폐기물 보관 창고가 설치될 예정임. 각 재활용 분리 수거장 및 폐기물 보관 창고는 인허가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각 동 출입구와 재활용 분리 수거장의 거리는 각 동별로 상이함. 해당 시설의 설치 위치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각 생활폐기물보관소의 위치, 규모 및 디자인은 시공여건에 따라 분양사와 다소 상이해질 수 있음.</li> <li>• 각 주동 하부 지하1층에는 제연헬룸, 동통신실 및 동전기실이 계획되어 있으며, 각 주동 하부를 포함한 지하3층, 지하2층, 지하1층에는 지하주차장 헬룸 및 DA 등이 계획되어 있어 이와 연결한 주동의 인접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으로 환경권 및 생활권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음. 단, 추후 실시공사 헬룸의 기능상의 이유로 DA가 일부 추가 또는 이동될수 있음.</li> </ul>
공급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1동, 32동, 33동, 34동의 직 하부 지하층에 제연헬룸이 설치되어 해당 동 저층세대는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34동 동 하부 지하층에 기계실, 정화조 및 정화조 관리층이 설치되어 해당 동 저층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가스, 상하수도, 지역난방 등 인프라 시설 및 연결은 관할부서 여건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li> </ul>
부대 복리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스카이라운지, 다이닝카페 등) 일체는 동선, 기능, 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에 의해 본공사시 내·외부 디자인과 용도, 규모, 구조, 높이, 재료, 창호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li> <li>• 각 부대복리시설을 이용하는 전용 출입구 및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로 인해 인접한 세대의 조망권, 일조권, 소음 및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li> <li>• 관리사무소는 21동과 31동 사이 지하1층에 설치되며 내부 라운지를 통해 지하주차장과 연결됨. 또한 채광 확보 및 접근을 위한 선큰과 외부계단이 설치되어, 이로 인해 시설과 인접한 세대의 조망권, 일조권, 소음 및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경비실은 단지 남측 차량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에 각각 1개소씩 계획되어 있으며, 경비실과 주차차단기(차량 출입구)의 위치 및 규모, 개수, 디자인은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li> <li>• 경로당(시니어클럽) 및 어린이집은 12동 북측 별동 지상1층에 함께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층과 연결되는 내부 엘리베이터가 로비에 설치 됨. 이로 인해 시설과 인접한 세대의 조망권, 일조권, 소음 및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본 단지의 부대복리시설에는 『주택법』 제 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및 운영될 예정임.</li> <li>•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찬성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li> <li>•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등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반대하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건사 신청 전까지 관할 지자체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협약 체결할 예정임.</li> <li>• 작은도서관(북카페) 및 독서실 공유오피스는 12동 북측 별동 지상2층에 함께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층까지 연결되는 내부 엘리베이터와 지상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이 설치 됨. 이로 인해 시설과 인접한 세대의 조망권, 일조권, 소음 및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키즈카페(실내놀이터)가 34동 북측 측벽 지상1층에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고 내부 화장실 계획이 없어서 인근 시설의 화장실 이용이 필요함에 유의하시고, 해당 시설과 인접한 세대의 조망권, 일조권, 소음 및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조식서비스라운지는 12동 북측 별동 지상1층에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층과 별도의 계단을 통해 연결됨. 화장실은 지하1층 계단 인근에 계획이 되어 있어 이용에 유의하시고, 해당 시설과 인접한 세대의 조망권, 일조권, 소음 및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주민공동시설 중 커뮤니티센터(피트니스, GX룸, 실내골프, 수영장, 사우나 등)는 33동과 34동 사이 지하1층에 설치되며, 채광 확보 및 접근을 위한 선큰과 외부계단이 설치됨. 라운지 및 내부 엘리베이터, 계단을 통해 지하주차장과 지상층이 연결되며, 해당 시설과 인접한 세대의 조망권, 일조권 소음 및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워시바(코인세탁실)와 워시박스(건식세차)가 33동과 34동 사이 지하 1층 커뮤니티센터 수영장인근에 별도로 구획되어 있으며, 로비에서 접근은 안되고 지하주차장과 직접 연결됨. 별도의 지상층 연결 계단 및 엘리베이터가 없음에 유의하시고 해당 시설과 인접한 세대의 조망권, 일조권, 소음 및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스카이크뮤니티(스카이라운지, 스카이게스트하우스)는 32동 지상 26층, 27층에 복층형으로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지상1층에 접근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됨. 해당시설과 인접한 세대의 조망권, 일조권, 소음 및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스카이게스트룸 내부에는 2개 시설을 연결하는 통로가 계획되어 있어서 1개의 시설로 동시 이용이 가능하며, 개별 이용 시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시니어클럽), 어린이집, 작은도서관(북카페) 및 주민공동시설 일체의 운영 및 유지 관리는 입주인이 자체적으로 하여야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시니어클럽), 어린이집, 지역공동체지원센터, 자연문화센터의 이동식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음.</li> <li>경로당(시니어클럽), 어린이집에 현관장 및 주방장이 제공되며, 바닥난방과 천장형 에어컨이 설치됨.</li> <li>작은도서관(북카페)의 도서(1,000권) 및 가구류, 실내운동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의 운동장비(단, 소모성 또는 개인장구류 제외) 및 탈의실 라커류는 제공되며, 기타 주민공동시설의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음.</li> <li>본 단지의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 및 단지내 공용부를 입주자의 입주지원 및 하자 보수를 위해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음.</li> <li>준공 후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의 일부공간은 입주고객의 입주관리 및 A/S업무를 위한 입주관리사무실 및 A/S센터로 일정기간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이므로, 일부 사용이 늦어질 수 있음.</li> <li>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li>단지 내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의 세부시설은 실제 공사 과정에서 위치가 바뀌거나 구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li> <li>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및 보일러실은 추후 실제 공사 과정에서 위치가 바뀔 수 있음.</li> <li>부대복리시설의 천장고 및 디자인은 시공성 및 설비, 전기 배관 등의 간섭 등으로 인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li> <li>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는 별도 구획공간 또는 지붕, 지상동출구간, 계단 하부와 같은 내·외부에 설치되고, 추후 현장 여건에 따라 조경계획이 일부 변경될수 있으며, 인접한 세대와 보행자에게 소음 및 진동, 열감, 팬 가동에 따른 바람이 전달되거나 조망권 침해 등 환경권 영향을 받을수 있음. 단, 추후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li> <li>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시니어클럽), 어린이집, 작은도서관(북카페),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스카이크뮤니티, 카페테리아, 키즈플레이라운지 등) 일체는 동선, 기능, 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에 의해 본공사시 내·외부 디자인과 용도, 규모, 구조, 높이, 재료, 창호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li> <li>각종 홍보물(분양 카달로그, 커뮤니티 CG 등)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커뮤니티 내부 프로그램, 마감재, 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li> <li>11동 및 21동 지상1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있어 인접 주 동의 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소음 및 냄새, 시야간섭 등 프라이버시 침해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31동 남측에는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있어 인접 주 동의 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소음 및 냄새, 시야간섭 등 프라이버시 침해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차량 주출입구 인근에 유치원 및 학원 등 통학차량의 승하차 대기 장소인 맘스존이 조성되며, 이로 인해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인근에 차량 대기를 위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시설물은 어린이 실내놀이공간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람. 추후 해당 시설의 명칭은 변경될 수 있음.</li> </ul>
주택형 별	공동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분양세대는 신축 구조물 계획에 따라 좌·우 대칭형 평면이 적용되지 않음.</li> <li>단위세대의 안목치수 및 발코니 면적산정 등의 법규는 기본형평면(발코니 비확장형, 단, 단열관련 기준은 관계법령에 따라 기본형 또는 확장형으로 진행가능)을 적용하며,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유무상 옵션(거실 및 복도 아트월, 주방벽마감, 가구, 가변벽체, 창호 옵션 등의 유사한 사항 등)으로 추가되는 마감재, 가구, 기기, 벽체 등의 두께(치수)는 안목치수 산정 시 제외하여 기본형 평면의 안목치수를 적용함. (단, 안목치수 산정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마감두께에는 벽체 바름층의 두께 등 미세한 치수(걸레받이, 천장몰딩, 벽지 등)를 포함하지 않음) 예를 들어, 거실폭의 안목치수가 4.5m일 때, 거실아트월타일, 타일 부착두께는 고려하지 않은 치수로, 석재, 타일 시공 시 실측치수는 해당자재 및 부착두께 만큼 줄어 들게 되고, 마감자재별 상이 할 수 있음.</li> <li>발코니 확장에 따른 추가 단열공사로 일부 벽체 및 천정이 돌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커튼박스, 몰딩, 마감재 및 가구류의 형태와 위치가 기준층 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li> <li>세대 내부 실시공 시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의 시공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시공상 하자에 해당되지 않음.</li> <li>타사와 당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을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건축허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li> <li>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폐업, 부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이 불가 시 동급, 동가 이상의 타제조사 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음. (이와 같은 상황 발생 시 공고한 바에 따라 적용되며 별도의 동의서는 징구하지 않음.)</li> <li>제공품목 및 자재류 등은 법규 및 제규정 변경, 정책 변경, 인허가, 단종, 수급 여건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li> <li>주택형별 기본제공품목은 상이하므로 분양홍보물, 인쇄물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아울러 분양홍보물과 인허가도서가 상이할 경우, 분양홍보물을 우선 기준으로 함.</li> <li>주택형별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시스템가구는 단위세대 평면계획에 따라 설치위치와 디자인 및 내부 수납기능이 상이함.</li> <li>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li> <li>단위세대의 마감 디테일은 품질 확보를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선행세대로 사용될 수 있음.</li> <li>단위세대의 마감자재는 제조일자에 따라 컬러 및 패턴이 견본주택에 시공된 품목과 다소 상이 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색상 및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음.</li> <li>단위세대 기본 천장고는 2.3M(거실, 침실 기준)이며, 현관, 복도, 주방 및 식당, 욕실, 실외기실, 발코니, 다용도실 등은 상이함. 또한, 실 시공 시 바닥재의 종류에 따라 법정 허용 한도 내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li> <li>단위세대의 우물천장 형태, 커튼박스의 길이, 깊이 및 형태는 천장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등의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다소 축소되거나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li> <li>단위세대의 욕실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li> <li>단위세대의 단차부(발코니/욕실/현관 등)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신발 걸림과 무관함.</li> <li>단위세대의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에는 크랙하자 방지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마감재 부착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음.</li> <li>단위세대의 마감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해 안목치수가 도면과 다를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위세대의 마감자재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노출될 수 있음.</li> <li>• 공장 생산 자재(타일, 벽지, 시트, 인조석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 및 시방서에 의해 결정됨.</li> <li>• 천연자재(석재, 목재 등)는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로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명시된 내용에 한정함.</li> <li>• 단위세대의 강마루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로 인한 장시간 수분 노출 시 표면재의 변형, 하지 비틀림 등 우려로 주의하시기 바람.</li> <li>• 단위세대의 천장 상부 몰딩의 규격 및 형태, 재질이 변경 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거실 우물천장 몰딩 디자인 및 규격(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단위세대의 창호 및 목창호의 형태 및 위치, 열림방향은 본 공사 시 시공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li> <li>• 단위세대의 목창호(침실 및 욕실도어)의 프레임 사이즈, 재질, 단차, 형태는 다소 변경 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위세대의 목창호 도어에 손끼임방지 장치가 제공 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위세대의 침실 내부에 위치한 SD도어는 도장마감으로 적용됨.</li> <li>• 단위세대의 천정, 벽체 도배 마감재는 봉투 바름에 의한 부착으로 테두리와 매립 박스 주위로만 접착이 됨. 그 외 부위는 들뜸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공법상 특성이며 하자가 아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위세대의 타일(현관,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마감의 적용부위의 나누기도 및 줄눈 위치는 형별, 타입별로 상이하며 본 공사 시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시공 위치 및 개소와 상이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위세대의 현관바닥 및 욕실벽체, 바닥 타일은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발생이 생길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마감재 모서리 부위에 재료분리대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추가 시공될 수 있음.</li> <li>• 단위세대의 인조석(인조대리석, 엔지니어드스톤)자재의 이음부는 자재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와는 무관하며, 이음부분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단위세대의 인조석(인조대리석, 엔지니어드스톤)자재는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재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와는 무관함.</li> <li>• 단위세대의 가구(알반, 주방)마감, 규격, 구성은 인허가 과정 및 하자방지,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 도서 치수와 상이할 수 있음.</li> <li>• 단위세대의 가구의 실사이즈는 마감, 단열재두께의 차이 등으로 도서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단위세대의 타입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가전 일체)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음.</li> <li>• 단위세대의 다용도실, 실외기실, 승강식피난구 등 도장으로 마감되는 부위의 벽체하부에 오염에 방지하기 위한 투명도장이 시공되며, 도장의 색상은 변경될 수 있음.</li> <li>• 단위세대의 승강식피난구 설치로 인하여 공간 천장과 바닥과 상부 세대와 교차로 피난에 대비한 시설물이 설치됨.</li> <li>• 다용도실은 각종 설비 배관 설치로 인하여 본 공사 시 천장 조성의 높이가 다소 조정될 수 있음.</li> <li>• 다용도실은 세탁과 건조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습기가 많아 곰팡이가 생기기 쉬우므로, 사용 시에는 자주 환기를 시켜야함.</li> <li>•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세대 내 설계변경(구성, 설치위치, 마감재 등)에 해당하는 내용을 요구할 수 없음.</li> <li>• 단위세대 욕실 출입문은 본 공사시 PVC계열(ABS)도어로 시공되며, 침실 문짝의 상·하부 모서리는 별도 마감이 생략될 수 있음.</li> <li>• 단위세대 욕실 벽과 바닥 타일은 시공 여건에 따라 줄눈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줄눈 간격 및 타일의 크기 또한 다소 불규칙 할 수 있음.</li> <li>• 단위세대 내부 욕실의 단차는 배수 처리를 위한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li> <li>• 단위세대 욕실 거울은 자재 특성상 세제나 습기에 의해 변색될 수 있으므로, 환기와 유지 관리에 유의하여야함. 또한 관리 소홀에 인한 하자는 입주자 책임임.</li> <li>• 세탁기 등을 두는 발코니 및 다용도실의 경우 발코니 확장유무와 관계없이 비난방 공간임.</li> <li>•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li> </ul>
피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위세대 173A타입, 173B타입, 140타입, 141A1타입, 141A2타입, 141B타입, 114A타입, 114B타입, 114E타입, 100타입, 117타입, 122타입, 198타입은 실외기실 내 피난사다리가 설치될 예정이며, 필로티가 계획된 주 동의 경우 필로티 상부 단위세대내 소방 피난용 완강기가 인근 발코니 또는 다용도실에 설치, 고정지지대는 발코니 창문 외부에 설치될 수 있음. 본 공사시 피난사다리 및 소방 피난용 완강기 등의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단위세대 176타입, 106타입은 피난실 내 피난사다리가 설치될 예정이며, 필로티가 계획된 주 동의 경우 필로티 상부 단위세대내 소방 피난용 완강기가 인근 발코니 또는 다용도실에 설치, 고정지지대는 발코니 창문 외부에 설치될 수 있음. 본 공사시 피난사다리 및 소방 피난용 완강기 등의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단위세대 114C1타입, 114C2타입은 침실1층 발코니 내 피난사다리가 설치될 예정이며, 필로티가 계획된 주 동의 경우 필로티 상부 단위세대내 소방 피난용 완강기가 인근 발코니 또는 다용도실에 설치, 고정지지대는 발코니 창문 외부에 설치될 수 있음. 본 공사시 피난사다리 및 소방 피난용 완강기 등의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단위세대 114D1타입, 114D2타입, 95A타입, 95B타입, 95C1타입, 95C2타입, 95D타입은 실외기실 내 인접세대측 벽체는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의 경량벽체가 설치될 예정임.</li> <li>• 하향식 피난사다리가 설치되는 실외기실, 발코니, 피난실 및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의 경량벽체가 설치되는 실외기실은 긴급상황시 피난동선으로 활용되므로, 물건 등을 적치하지 않고 피난 동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함.</li> <li>• 하향식 피난사다리는 짝수층, 홀수층 교차되게 설치되며, 설치되는 바닥 상부에 피난용 하향식 사다리 관련 설비가 노출되어 있음. 하향식 피난사다리는 각 동 최하층 세대는 설치되지 않음.</li> </ul>
단위 세대 평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계약 체결 이후에는 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 변경이 불가하오니, 계약 전 도면 및 사양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li> <li>• 타사 또는 당사의 다른 사업장과의 마감 사양을 비교하여, 견본주택(사이버모델하우스)및 인허가도서에서 제시되지 않은 항목의 추가 설치나 교체는 요구할 수 없음.</li> <li>• 공사 진행 중에는 공종별 공사 방법에 따라 일부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법의 선정 및 변경은 시공사의 고유 권한임. 계약자는 이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다투거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세대는 공사 품질 향상 및 시공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공사 중 선행세대로 사용될 수 있음.</li> <li>• 비확장형 세대는 확장형에 비해 공간 및 제품품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계약 후 이에 대한 이의 제기는 불가함.</li> <li>• 세대의 반자높이(천정고)는 건축물의 구조 안전 등의 이유로 존치되는 기존 구조체의 형태 등에 따라 타입 및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기존 구조체의 현황 및 바닥재 등에 따라 도면상의 치수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세대의 반자높이(천정고)는 건축물의 구조 안전 등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추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개인의 취향에 따른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li> <li>• 우물천장 형태, 커튼박스의 길이·깊이·형태는 천장 내부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설치, 존치되는 기존 구조체 등으로 인해 다소 축소되거나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li> <li>• 욕실 천장 높이는 바닥 타일의 마감 및 구배, 천장 내 설비 배관 설치 등으로 인해 도면상의 치수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현관·욕실·다용도실 등 단차부는 바닥 구배 시공에 따라 시공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의 물넘침 방지를 위해 계획된 것으로, 신발 걸림과는 무관함.</li> <li>• 세탁기 등을 설치하는 다용도실 및 발코니는 확장 유무와 관계없이 난방이 제공되지 않는 비난방 공간임.</li> <li>•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li> <li>•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 또는 조적벽 등) 접합부에는 크랙 방지를 위해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마감재 부착 디테일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li> <li>• 주택형별로 기본 제공 품목 및 옵션 품목은 상이하므로, 분양 홍보물과 인허가 도서가 상이할 경우 홍보물을 기준으로 함.</li> <li>• 개인이 시행한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세대 내·외부의 파손 및 훼손 사항은 모두 본인의 책임이며, 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해야함.</li> </ul>
가구 및 마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세대 타입별 형태에 따라 단열 및 벽체, 창호, 몰딩 및 걸레받이, 조명류 등의 설치위치가 상이하며 가구와 마감재의 디자인과 품목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음.</li> <li>• 주택평형 제공되는 가구의 수량, 크기, 형태, 마감자재 및 사양, 제공유무 등이 상이하오니 카달로그 및 분양홍보물을 통하여 제공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람.</li> <li>• 세대 도어를 비롯한 샤워부스, 욕실장 등 제작제품의 경우 디자인, 세부사양, 컬러, 손잡이 사양 등이 본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li> <li>• 세대 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기본으로 설치되는 가구는 마감재 설치, 전기배선 등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 불가함.</li> <li>• 가구(일반, 주방, 욕실)마감, 규격, 구성은 인허가 과정 및 하자방지,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 도서 치수와 상이할 수 있음.</li> <li>• 가구의 실사이즈는 마감, 단열재두께의 차이 등으로 도서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가구류(일반, 주방, 욕실)의 설치부위의 노출되지않은 천장 및 바닥, 후면 및 측면은 마감재가 미시공 됨.</li> <li>• 가구류의 하드웨어, 액세서리, 디테일은 품질 확보를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li> <li>• 가구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으나, 이는 하자의 사유가 되지 않음.</li> <li>• 세대 내 적용되어있는 거울(현관, 침실, 욕실 등) 및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람.</li> <li>• 주방가구 상하부장 뒷판의 상하부면은 마감이 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하자의 사유가 되지 않음.</li> <li>• 주방상판은 물턱이 없으며 사용시 물튀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하자의 사유가 되지 않음.</li> <li>• 주방 상부장 뒷면 또는 측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므로, 가스배관이 지나가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음.</li> <li>• 렌지후드가 적용되는 상부장의 내부에 주방 자동식 소화장치가 설치되며, 수납공간 활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온수분배기는 싱크볼 하부에 노출되어 설치됨.</li> <li>• 싱크장(싱크볼이 적용되는 하부장) 내부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일반 주방하부장과 깊이가 상이함.</li> <li>• 싱크장 내부에 온수분배기 가림판이 설치되며, 온수분배기 설치 위치에 따라 가림판의 설치 위치가 다를 수 있음. 수납공간 활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주방 아일랜드장은 가구 내 배선기구의 설치로 인해 이동이 불가하며, 위치 이동 및 철거 시 바닥에 인출된 전선관을 고려하여야 함.</li> <li>• 현관팬트리, 복도팬트리, 주방팬트리, 드레스룸팬트리 등 공틀이 구성되는 가구의 상부에는 환기겸용 도어 스토퍼가 설치되며 상부 이격설치가 기준임.</li> <li>• 세대 내 수납가구 및 시스템선반의 배치는 좌우 세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안목치수에 따라 일부 깊이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세대 내 주방가구 및 수납가구의 내부 구성은 본공사 시 사용성 향상을 위해 변경될 수 있으며, 조명 등이 설치되는 가구는 점검구 설치 및 안정기 매립을 위해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일부 발생할 수 있음.</li> <li>• 시스템선반은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으며, 디자인 및 레이아웃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li> </ul>
발코니 및 실외기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용도실, 실외기실 등 발코니 타입의 실의 바닥레벨은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li> <li>• 발코니 측·외벽에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가구 및 구조체 등의 치수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다용도실 세탁기 설치구간의 바닥단차 및 다용도실 가구 형태, 적용 위치는 본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li> <li>• 타일은 시공 시 인접 타일과 줄눈 두께 상이 혹은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본 공사시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음.</li> <li>• 바닥 타일의 줄눈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li> <li>• 일부 발코니에는 선홍통 및 배수구가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실제 시공 시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li> <li>• 각 타입별로 윗층 세대 세탁배수배관이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같은 타입이라도 동별로 건축구조상 배관길이 및 위치가 다를 수 있음.</li> <li>• 일부 구간에 배수배관이 노출 설치 될 수 있음.</li> <li>•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발코니 또는 발코니 인접실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함.</li> <li>• 일부 단위세대는 서울시 건축물 심의 기준에 따라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며, 해당 발코니에는 외부 샷시를 설치할 수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방형 발코니에는 유리난간대가 설치되며, 기상 상황에 따라 난간대 떨림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개방형 발코니는 외기에 노출되어 있어 배수 등을 위해 배수입상관이 설치되며, 세대 내부로 물넘침 등 방지를 위해 배수입상관이 막히지 않도록 입주자의 관리가 필요함. 해당 발코니 배수입상관으로 인해 해당 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 조망간섭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개방형 발코니의 배수입상관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함.</li> <li>• 개방형 발코니 하부 세대 및 지상 1층의 보행자는 개방형 발코니 낙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동절기에는 개방형 발코니 배수구에 고드름이 맺혀 하부로 낙하할 수 있음.</li> </ul>
창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방충망 개폐방식 등의 창호사양과 로이코팅 적용 부위, 공기층 종류 등의 세부스펙은 인허가 진행, 풍동실험 및 외부입면계획 및 실시공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층별, 주택형별에 따라 세대 창호 크기는 상이할 수 있음.</li> <li>• 내/외부 창호의 프레임 외부면에는 도장이 적용될 예정이며, 실시공 과정에서 세부 도장부위는 변경될 수 있음.</li> <li>• 내/외부 창호의 개폐방향 및 손잡이 디자인은 실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li> <li>• 견본주택(사이버모델하우스 포함)에 설치된 세대내 실외기실 루버창의 형태, 규격, 손잡이, 방충망 개폐방식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li> <li>• 세대내 실외기실 루버창의 색상은 같은 세대타입이라도 동별/층별 상이할 수 있으며, 일부 타입은 루버외부에 세대환기를 위한 환기캡이 시공됨.</li> <li>• 세대내 실외기실 루버창은 자동개폐루버로 설치되며, 자동개폐루버의 개폐 작동 및 구동 방식 등에 대하여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자동개폐루버 컨트롤러는 본 공사시 사양, 위치, 디자인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발코니 확장 구간의 창호는 PVC 조망형이중창(난간 설치시 유리난간 일체형창호) 또는 하부FIX 상부 Tilt&amp;Turn 삼중유리단창이 설치되며, 유리난간의 경우 창호 프레임에 고정되어 있어 이동이 불가능하므로 이사 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li> <li>• 또한, 유리난간이 설치되는 이중창의 경우 외부창호는 유리난간이 설치되는 부위만 이동 및 개폐(슬라이딩식)가 가능하며, 유리난간이 설치되지 않는 창호는 안전상 고정되어 이동 및 개폐(슬라이딩식)가 불가능함.</li> <li>• 유리난간대의 높이는 바닥 마감기준 1,300MM이며, 설치제품, 발코니 확장 유무 및 일부 시공오차에 따라 높이가 상이할 수 있음.</li> <li>• 비확장 발코니가 있는 침실의 경우 분합창이 이중창으로 설치되며, 외부 창호는 조망형단창(유리난간 일체형창호)으로 설치됨.</li> <li>• 창호는 미닫이(Sliding) 또는 Tilt&amp;Turn 창호이며, 본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li> <li>• 세대 현관문은 동일 주택형별이라도 열림 방향 및 높이 등이 상이할 수 있음.</li> <li>•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경우 적법한 결로 및 단열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환기 및 실내습도 관리 소홀로 인한 결로발생의 경우 하자의 사유가 될 수 없음.</li> <li>• 세대내 목창호, 여닫이 창호 및 일반가구/주방가구 문짝의 개폐방향은 수분양자의 편의를 위해 변경될 수 있음.</li> <li>• 세대 내 목문, ABS문의 힌지 및 손잡이, 손끼임이 발생하는 코너부위 디테일 및 손끼임방지장치의 사양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li> <li>• 세대내 창호는 인테리어 마감, 시스템 에어컨 등의 간섭을 고려하여 창호높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li> </ul>
전기/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확장발코니, 세탁기 등을 두는 다용도실, 실외기실의 경우 비난방 공간임.</li> <li>• 수전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는 배수구 등의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li> <li>• 욕실에 바닥난방이 적용되며 샤워부스바닥, 욕조 하부에는 난방이 설치되지 않으며, 별도 제어용 온도조절기가 없음.</li> <li>• 욕실 천장에는 욕실 환기용 배기팬 및 배관 점검용 점검구가 설치됨.</li> <li>• 일부 세대 내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홀이나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li> <li>• 욕실 세면대, 양변기, 다용도실 수전, 주방개수대, 쿠팩, 주방후드의 위치는 시공중 하자 예방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본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li> <li>• 세대 주방 및 욕실배기가 공동배기 방식으로 최상층 및 인접세대에 냄새가 전달될 수 있음. 옥상층에 강제동력 환이 설치되어, 이로인해 일부 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눈부심 및 빗공해, 조망간섭 등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세대 화장실 배관의 경우 층하배관으로 설치되어 추후 유지 및 보수 시 하부층 천장을 통해 점검할 수 있음.</li> <li>• 당 사업장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지역난방)으로 별도 난방기 설치가 불가하며, 별도 개별 난방기 설치에 의한 훼손 및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음.</li> <li>• 드레스룸 및 펜트리가 설치되는 세대는 온도조절기가 설치 되지 않으며 인근 방 및 거실의 온도조절기와 연동되어 조절됨.</li> <li>• 주방 싱크대 하부장의 온수분배기 가림판으로 인하여 수납공간이 줄어들고, 온수분배기는 본 시공시 세대별 위치와 크기가 변경 될 수 있음.</li> <li>• 단위세대에 음식물쓰레기이송설비 투입구가 설치되는 하부에는 장비설치로 수납공간으로 사용이 불가함.</li> <li>• 주동의 외벽에 가스 입상배관이 노출 설치되며, 렌지후드는 상부 가구장 일부를 사용하여 가구장 내부 공간이 축소될 수 있음.</li> <li>• 또한 실외기실에는 가스배관과 계량기가 노출 설치되며, 위치, 형태, 크기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설치위치는 현장여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li> <li>• 단지 정화조용 배기가 32동 옥상 최상층으로 인출되어 인접세대에 냄새가 전달될 수 있음. 현장여건에 의해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세대 내 천장속 배관 및 덕트 설치 등으로 인해 커튼박스의 길이 및 깊이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세대분전함, 통신단자함, 배선기구(일괄소등스위치, 네트워크스위치, 콘센트 등)의 설치위치는 본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li> <li>•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 위치는 입주후 입주자의 식탁의 배치와 관계없이 설계시 적정위치로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되는 식탁 위에 설치되며 위치 변경은 불가함. 입주 후 식탁등의 설치방향을 변경할 수 없음.</li> <li>• 세대분전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주택용 분전반 업무처리방법 특별강조 지시사항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될 수 있으며 추후 위치 변경은 불가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단지함은 노출된 장소에 시설할 수 있으며 추후 위치 변경은 불가함.</li> <li>• 세대 조명기구의 색온도는 4,000K(백색)으로 적용되며 고효율인증 취득하므로 추후 6,500K(주광색)등으로 색온도 변경은 불가함.</li> <li>• 주방 렌지후드 상부장은 주방 자동식소화기 설치공간이기 때문에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려움.</li> <li>• 실제 본공사시 세대내 욕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정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가스배관이 설치되거나 후드의 배관이 설치되는 주방의 상부장은 수납장 내부의 깊이와 형태가 변경되거나 수납공간으로 사용 불가할 수 있음.</li> <li>• 세대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입주 후 세대에서 사용하는 대용량 전열기기로 인해 순간 전압강하 현상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는 조명기구 및 타 가전제품의 작동 이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단지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li>•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됨.</li> <li>• 세대 전열교환기는 실외기실에 필터 교체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장비와 연결 덕트가 노출로 설치되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일부세대 (117,122타입)은 발코니에 설치됨. 세대 평면 구조 및 현장 시공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달라 질수 있음.</li> <li>• 도시가스 배관 및 가스계량기 등은 실외기실에 설치되며, 세대 평면 구조 및 현장 시공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달라 질수 있음.</li> <li>• 냉장고 급수용 공배관은 냉장고 자리 벽면 좌측 하부에서 주방 개수대 하부장(온수분배기 근처)까지 매립배관 되며, 사용자가 별도 부속을 사용하여 급수분기하고 배관연결하여 사용하여야 함.</li> <li>• 각 층 세대 공용부 피트 내부에 급수 계량기가 설치되며, 외기에 취약한 일부 층에 동파방지열선(카바형)이 설치됨.</li> <li>• 동별 외부 가스배관 입상에 3층까지 방범용 배관카바가 설치됨.</li> <li>• 주방 싱크대 하부에는 세대 난방 분배기가 설치되어, 하부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려움.</li> <li>• 커뮤니티센터, 공용시설(경로당,어린이집,경비실) 및 주구중심상가의 실외기 가동 시 인접세대에 소음, 분진,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미관저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건본주택(사이버모델하우스 포함)에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실제 시공 시 상세 위치 및 사양은 변경될 수 있음.</li> <li>• 건본주택(사이버모델하우스 포함)에 설치된 수전류, 욕실 마감자재(양변기, 세면기, 휴지걸이, 수건걸이, 수건선반 등), 욕실FAN 등의 사양 및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되거나 상이할 수 있음.</li> <li>• 건본주택(사이버모델하우스 포함)에 설치된 세대 수전(세탁, 손빨래, 발코니) 사양 및 수전 높이, 위치는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li> <li>• 건본주택(사이버모델하우스 포함)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배선기구, 조명기구, 세대단자함, 환기디퓨저 등 각종 기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개소는 실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li>• 건본주택(사이버모델하우스 포함)내 전시품은 디스플레이 가전, 인테리어 소품가구 및 패브릭, 연출용 조명(전시용 간접조명, 스탠드, 펜던트, 스포조명 등)과 소품 등이 포함되며, 이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음.</li> <li>• 건본주택(사이버모델하우스 포함)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사양, 위치,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세대 내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음. (마감형태, 천정 및 커튼박스, 창호, 가구 등)</li> </ul>
분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항위(중문 등 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li> <li>• 외국인인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취득신고를 해야 하고,</li> <li>-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 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li> <li>-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부동산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함</li> </ul> </li> <li>•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li> <li>• 2007년 7월부터 법정계량단위 사용의무화 조치(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가 시행됨에 따라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sup>2</sup>)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li> <li>• 본 단지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시 현재 조건을 확인 후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음</li> <li>•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 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시행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함</li> <li>•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li> <li>•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 있음.</li> <li>•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본 아파트 각 시설의 명칭, 외부 상세계획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색채심의, 법규변경, 현장시공 여건 및 상품 등 디자인 개선 등 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li> </ul>
제작물, 인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용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공급안내문, 분양계약서를 살펴보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li> <li>•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건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li> <li>•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에 제작된 사전 홍보자료는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계약 전 건본주택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어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li> <li>•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가능 하오니,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해야 함.</li> <li>• 인접지역 개발 등의 사업으로 개설되는 도로 및 하천, 자전거 도로, 경관녹지, 완충녹지 등은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모형도, 단지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도로 및 하천, 경관녹지, 완충녹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하기 바랍니다.</li> <li>• 각종 인쇄물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음.</li> <li>• 각종 인쇄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li> <li>•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그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 조경,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li> <li>•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단지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각종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공간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li> <li>• 각종 인쇄물에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건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ul>
분양 상담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양상담 및 계약 과정에서 분양직원의 아래와 같은 행위는 당사의 지침과 위배된 사항으로 당사와 무관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프리미엄 보장, 추가 할인, 계약 해제, 연체료 감면 및 이와 유사한 보장 행위</li> <li>2. 계약 후 환매를 보장하는 행위</li> <li>3. 분양대금을 제외한 일체의 금전 거래 행위</li> <li>4.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별도의 개별 약정 행위</li> </ol> </li> </ul>

## 11 기타 사항

###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7호 규제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2일 이상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 입주예정일 : 2027년 03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전쟁, 내란,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 파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되며,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회사에서 선수관리비를 부과합니다.
- 2021. 2. 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은 60일 이상 제공할 예정입니다.

###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라 소비자 피해보상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통합경비실, 부대복리시설A동(경로당, 어린이집, 독서실, 작은도서관, 비즈니스라운지), 부대복리시설B동(조식서비스라운지), 지하주차장 및 주민운동시설(B1F : 실내수영장, 사우나(남/여), 실내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피트니스, 멀티스포츠룸, 프라이빗시네마), 주민공동시설(B1F : 워시박스, 워시바 / 32동 1층 : 용역원휴게실(남/여) / 32동 26층 : 스카이라운지 / 32동 27층 : 게스트룸 / 34동 1층 : 키즈 실내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 주차장 출입 가능한 제한 높이

- 지하주차장 주행통로는 지하1층 높이 2.7m 및 지하2층~지하3층 높이 2.3m로 설계되었으며, 지하주차장으로의 차량 출입구 높이 2.7m 이상, 주차구획은 2.1m 이상 높이로 설계되었습니다. (외부로부터 차량진입은 단지 남측 11동과 21동 사이 1개소, 21동과 31동 사이 1개소로 각각 진입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건축	전기	정보통신·소방
회사명	(주)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유원이앤에프(주)	(주)지여이앤씨
감리금액	5,458,481,950	620,855,879	898,7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주택법」 제57조제1항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공시항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항목(7개)	1. 택지비	2. 직접 공사비	3. 간접 공사비	4. 설계비	5. 감리비	6. 부대비	7. 그 밖의 비용	합계
금액	195,149,600,026	21,246,788,066	8,699,741,294	604,160,591	428,223,519	2,261,206,079	29,777,109,981	258,166,829,556

2)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금액	산출근거	
<b>합계</b>	<b>24,345,696,546</b>		
택지 가산비	말뚝박기 공사비	145,302,219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	2,778,666,833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방음벽 설치비	62,200,042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간선시설 및 도시공원의 설치비	5,468,175,055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지장물 철거비	3,081,662,074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감정평가 수수료 및 검토 수수료	888,021,200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정비사업 등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	5,037,963,821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택지와 관련된 필요적 경비	6,883,705,302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b>합계</b>	<b>29,777,731,042</b>		
건축 가산비	법정초과 복리시설 설치비	706,946,484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사업계획승인조건에 따른 가산비용	19,178,246,416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인텔리전트 설비에 따른 가산비용	4,834,146,772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분양보증수수료	320,488,754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에 따른 가산비용	588,644,368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지하층 층고상향 공사비	125,337,730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안전관리비	87,806,903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법령 조례 제개정 등에 따른 비용	3,936,113,615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주택법」 제57조제7항에 따라 공시하는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분양가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상한금액 이하로 확정된 분양가격 공시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여지가 되지 않습니다.

☐ 택지에 대한 감정평가액과 감정평가 기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5항)

(단위 : 원)

구분	감정기관	감정금액	산술평균
감정평가 금액	(주)호암감정평가법인	1,622,961,420,000	1,589,443,738,500
	(주)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1,555,926,057,000	

☐ 친환경 건축물 성능수준 표기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1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제3항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항,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건축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 조치 준수(가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다목 지역난방
	고효율 전동기(라목)	○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 고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가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전기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내진 성능등급 표시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제3항 및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내진능력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등급, VII-최대지반가속도)으로 표기)

최대유효지반가속도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 등급)
0.197g	MMI VII등급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공동주택 성능등급의 표시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h3 style="margin: 0;">녹색건축 예비인증서</h3>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p><b>건축물 개요</b></p> <p>건축물명 :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건축주 :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주력조합                  준공(예정)일 : 2026.01.31.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601-160번지 외 2필지                  층수 : 지하3층, 지상27층                  연면적 : 177,628.6700㎡ (평가연면적: 172,826.6400㎡)                  건축물종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무한종합건축사사무소</p> </div> <div style="width: 45%;"> <p><b>인증 개요</b></p> <p>인증번호 : G-SEED-P-2024-0766-5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유효기간 : 2024.08.22. ~ 사용승인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날</p> <p><b>인증 등급</b></p> <p>인증등급 : 우수(그린2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764호,                  환경부고시 제2019-248호,                  인증기준 운영세칙(2020.04.30.))</p> </div> </div> <p style="font-size: small; margin-top: 10px;">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우수(그린2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p style="font-weight: bold; color: green;">종합등급 ★ ★ ★ ★</p> </div> <p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small;">2024년 08월 22일</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large;">한국부동산원장</p> <p style="font-size: x-small; margin-top: 5px;">*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 style="font-size: small; margin: 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정(별지 제6호서식) &lt;개정 2017.1.20&gt;</p> <h3 style="margin: 0;">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h3>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p><b>건축물 개요</b></p> <p>건축물명 :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준공연도 : 20260131                  주소 : 서울 용산구 이촌로 303 외 2필지                  층수 : 지하3층 / 지상27층                  연면적 : 173341.37(㎡)                  건축물의 주인 명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무한종합건축사사무소</p> </div> <div style="width: 45%;"> <p><b>인증 개요</b></p> <p>인증번호 : 24-주-에-1-0088                  평가자 : 심희성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권사 완료일</p> <p><b>인증 등급</b></p> <p>인증등급 : 1+등급</p> </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p>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x-small;"> <thead> <tr> <th>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th> <th>요구량</th> <th>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th> <th>등급</th> <th>단위면적당 CO<sub>2</sub> 배출량 (kg/㎡·년)</th> <th>배출량</th> </tr> </thead> <tbody> <tr> <td>에너지 저소비량 건축설계</td> <td>94.4</td> <td>1+ (48)</td> <td>1+</td> <td>22.0</td> <td>22.0</td> </tr> <tr> <td>에너지 고효율 건물</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에너지 다소비량 건축설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div> <div style="margin-top: 10px;"> <p>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x-small;"> <thead> <tr> <th>구분</th> <th>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th> <th>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th> <th>단위면적당 CO<sub>2</sub> 배출량 (kg/㎡·년)</th> </tr> </thead> <tbody> <tr> <td>냉방</td> <td>23.7</td> <td>9.0</td> <td>4.2</td> </tr> <tr> <td>난방</td> <td>30.4</td> <td>37.8</td> <td>6.3</td> </tr> <tr> <td>급탕</td> <td>30.7</td> <td>33.7</td> <td>5.6</td> </tr> <tr> <td>조명</td> <td>9.6</td> <td>8.8</td> <td>4.1</td> </tr> <tr> <td>환기</td> <td></td> <td>3.8</td> <td>1.8</td> </tr> <tr> <td>합계</td> <td>94.4</td> <td>93.1</td> <td>22.0</td> </tr> </tbody> </table> <p style="font-size: x-small; margin-top: 5px;">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 에너지소비량에 연료의 질취, 가열,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sub>2</sub> 배출량 : 에너지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V]설치된 [ ]설치되지않은)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p>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4년 05월 30일</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large;">한국부동산원장</p> </div>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요구량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	등급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 (kg/㎡·년)	배출량	에너지 저소비량 건축설계	94.4	1+ (48)	1+	22.0	22.0	에너지 고효율 건물						에너지 다소비량 건축설계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 (kg/㎡·년)	냉방	23.7	9.0	4.2	난방	30.4	37.8	6.3	급탕	30.7	33.7	5.6	조명	9.6	8.8	4.1	환기		3.8	1.8	합계	94.4	93.1	22.0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요구량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	등급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 (kg/㎡·년)	배출량																																																
에너지 저소비량 건축설계	94.4	1+ (48)	1+	22.0	22.0																																																
에너지 고효율 건물																																																					
에너지 다소비량 건축설계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 (kg/㎡·년)																																																		
냉방	23.7	9.0	4.2																																																		
난방	30.4	37.8	6.3																																																		
급탕	30.7	33.7	5.6																																																		
조명	9.6	8.8	4.1																																																		
환기		3.8	1.8																																																		
합계	94.4	93.1	22.0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 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 시공,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 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예비인증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을 계획이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표준사업약정 관련

•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합니다. 다만, 채권양도의 효력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별도로 채권양도사실을 통보하는 날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요 보증내용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92026-101-0000700호	₩206,533,60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금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대상이 아닙니다.

<p>○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p>
<p><b>【공사】</b>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b>【주채무자】</b>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b>【분양이행】</b>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친 <b>【환급이행】</b>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p>
<p>○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p>
<p><b>【대물변제】</b>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b>【허위계약】</b>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p>
<p>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p>
<p><b>【입주금】</b>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p>
<p>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p>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호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롯데건설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270171-0034698	110111-0014764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303(이촌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14길 29 (잠원동)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분양사무실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lottecastle.co.kr>

■ 분양사무실 위치 및 분양문의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북로 2256, 르엘캐슬갤러리, East동 4층 (자양동) ☎02-790-0190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 등은 당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서 약관에 따르며,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		2026.03.30.(월)	
특별공급 접수일		2026.04.09.(목)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해당지역	2026.04.10.(금)
		기타지역	2026.04.13.(월)
	2순위 접수일(해당/기타지역)		2026.04.14.(화)
당첨자발표일		2026.04.20.(월)	
사전 서류접수(우편 접수)		2026.04.20.(월) ~ 2026.04.24.(금) - 5일간	
계약체결		2026.05.02.(토) ~ 2026.05.04.(월) - 3일간	

## 분양문의 02-790-0190

분양사무실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북로 2256, 르엘캐슬갤러리, East동 4층 (자양동)  
 홈페이지 : <https://www.lottecastle.co.kr>

